

국제수산협상 연간 백서

2022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수산협상 연간 백서

2022

해외수산협력센터



2022년

해외수산협력센터 연대표

1월 | January

제10차 SPRFMO 연례회의

2월 | February

제1차 ICCAT EMS 작업반 회의

3월 | March

ICCAT 패널2 회기간 회의
제36차 FAO 아태지역 총회

5월 | May

제26차 IOTC 연례회의

6월 | June

제10차 IOTC 할당기준 기술위원회 회의
ICCAT 패널1 회기간 회의(1차)
제6차 SIOFA 이행위원회

7~8월 | July~August

제10차 SIOFA 당사국회의
제7차 WCPFC NC-IATTC 참다랑어 합동 작업반
PSMA 아시아지역 워크숍
제100차 IATTC 연례회의

9월 | September

제35차 FAO 수산위원회
WCPFC NC18 한-일 양자회의
WCPFC NC18 한-미 양자회의
제44차 NAFO 연례회의
제18차 WCPFC 기술이행위원회
WCPFC TCC18 한-미 양자회의
WCPFC TCC18 한-대만 양자회의

10월 | October

제18차 WCPFC 북방위원회
제17차 CCSBT 이행위원회
제29차 CCSBT 연례회의
ICCAT 패널1 회기간 회의(2차)
제68차 IWC 총회
제41차 CCAMLR 연례회의

11~12월 | November~December

ICCAT 특별회의 한-영 양자회의
제23차 ICCAT 특별회의
WCPFC19 한-뉴 양자회의
WCPFC19 한-일 양자회의
제19차 WCPFC 연례회의
제19차 SEAFO 연례회의
제130차 OECD 수산위원회

2022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수산협상
연간 백서

CONTENTS



제1장 일반기구

- | | |
|-----------------------------|----|
| • 향만국조치협정(PSMA) 아시아지역 워크숍 | 08 |
| • 제35차 식량농업기구(FAO) 수산위원회 | 12 |
| • 제68차 국제포경위원회(IWC) 총회 | 16 |
| • 130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산위원회 | 20 |

제2장 지역수산기구

• 제10차 남태평양지역수산기구(SPRFMO) 연례회의	26
• 제1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EMS 작업반 회의	35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패널2 회기간 회의	38
• 제26차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연례회의	45
• 제10차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할당기준 기술위원회 회의	53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패널1 회기간 회의(1차)	56
• 제6차 남인도양수산위원회(SIOFA) 이행위원회 회의	61
• 제9차 남인도양수산위원회(SIOFA) 당사국회의	65
• 제7차 WCPFC NC-IATTC 합동 작업반	68
• 제100차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연례회의	74
• 제44차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연례회의	80
• 제18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기술이행위원회	82
• 제18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북방위원회	88
• 제17차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이행위원회	93
• 제29차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연례회의	97
•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ICCAT) 패널1 회기간 회의(2차)	101
• 제41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연례회의	106
• 제23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특별회의	112
• 제19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연례회의	124
• 제19차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연례회의	129

제 1 장

일반기구

- 항만국조치협정(PSMA) 아시아지역 워크숍 08
- 제35차 식량농업기구(FAO) 수산위원회 12
- 제68차 국제포경위원회(IWC) 총회 16
- 130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산위원회 20



2022 | 국제수산협상
해외수산협력센터 | 연간 백서



1-1

항만국조치협정(PSMA) 아시아지역 워크숍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항만국조치협정(PSMA) 아시아지역 워크숍
(회의명 영문) Port State Measures Agreement Asia Region
Coordination Meeting
- 일시/장소 : 2022.7.11.~7.15(5일) / 서울

2. 참석규모

- 참가국 : 15개국(한국, 일본,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 대표자
약 40명 참석
- 우리나라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원양산업과,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 조업감시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수산협력센터





II 회의 결과

1. 한국-FAO 사무국 주요 질문·답변

구분	질문	FAO 답변
수품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국 검색 모식도를 보면 선박이 입항 신청 후 특정 장소에서 검색을 받은 후 입항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항만국 검색이 입항 전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항 신청 단계에서 선박에 대한 항구국의 초기 검토가 이루어짐. • PSMA에서 ‘항구’의 의미는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음. • 검색 장소는 항구국의 재량이고, 중요한 것은 해당 장소의 지정 여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정보교환 시스템(GIES)를 사용하여 항구국과 기국 간 조업정보(어획위치 등)도 교환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보고서(부록C)에 작성된 조업정보는 항구국이 검색보고서를 등록하면 제15조에 명시된 주체들에게 자동적으로 공유됨. • GIES를 통해 공유할 정보 및 공유될 대상에 대해서는 정보교환 작업반에서 추가 논의 필요.
국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지역기구 중 항만국 조치에 관하여 전자적인 정보교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곳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동대서양수산위원회(NEAFC), 남태평양 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에 있으나 시스템이 부분적으로만 전자적이고, 다른 정보는 pdf를 통해 이메일로 전송하고 있음. • IOTC EPMS는 완전히 전자적이거나, 인도양 참치만을 대상으로 하고 비회원국은 시스템 이용이 불가함. • 비전자적 방식은 지역기구 사무국에게 업무 부담을 초래하고, 정보는 실시간으로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하므로 지역기구들이 GIES를 사용하면 유용할 것.
원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당사국도 GIES에 접근 가능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당사국은 접근 불가함. 이메일로 링크를 받아야만 가능하고, 자국이 제출한 정보 또는 자국과 관련된 정보만 열람 가능함.

2. 회원국-한국 주요 질문 · 답변

구분	질문	한국 답변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항만국 검색관 교육훈련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관들은 지방을 순환근무하고 있음. 순환근무의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점 : 어느 지역, 어느 업무든지 적응력이 생김. - 단점 : 다른 지원으로 이동하면 새로운 업무 및 상황에 적응해야 하므로 역량 구축에 어려움 있음. • 검색관들이 검색 외 다른 업무도 같이 하고 있음. • 검색관 교육은 집합교육, 교재개발, 영상 교육을 하고 있음.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을 위한 승선 시 관여하는 다른 기관이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품원이 수산물 검색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해경 및 기타 기관의 협조를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선 시 어려움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장벽으로 인해 선장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원 근로조건도 조사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원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FA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국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국과 좋은 연락 시스템을 갖고 있음. 상황이 생기면, 이메일, 전화 등으로 연락함. 큰 어려움 없었음.

3. 작업반 논의

- (개요) 3개 그룹*으로 나뉘어 3차 당사국 회의에 제출된 설문조사 문항들을 토대로 국가별 PSMA 이행 성과, 어려움, 효과성 제고 방안 논의

* 그룹A · 그룹B (현장) :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한국
 그룹C (화상) :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몰디브,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SEAFDEC



○ (주요결과)

구분	주요결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국가들은 PSMA 이행 필요성을 인식하였지만, 절실한 필요성 수준에서는 상이하였음. 이는 다자기관으로부터의 재정지원과 함께 FAO로부터 특히 개도국을 위한 특별한 역량구축 프로그램 필요성을 부각시킴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FAO와 지역수산기구들은 PSMA 비당사국들에게 PSMA의 유익을 설명하고 PSMA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 워크숍을 개최해야 함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PSMA 이행을 위한 지역 내 국가들의 다양한 전자적 플랫폼을 고려할 때, GIES와 함께 이것들을 조화시키기 위한 역량구축 프로그램이 필요함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IUU 근절을 위해 당사국 간 그리고 비당사국과도 효과적인 정보교환을 위해 PSMA 이행에 관한 지역 협력 및 협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PSMA 이행에 관한 경험이 많은 국가가 다른 국가들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기능하여 역량구축을 촉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수산기구는 회원국들의 PSMA 이행을 통한 성공 이야기와 유익들을 문서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이는 다른 국가들의 PSMA 이행 제고에 기여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FAO는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통해 이를 촉진해야 함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중 PSMA 이행 관련 검색관 및 국가 당국이 직면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코로나 상황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여, 모든 관계자의 역량을 구축하고 표준 운영절차를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FAO 및 지역수산기구도 여기에 기여할 수 있음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문지 문항들의 의미 명확화 필요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GIES의 완전한 이행, GIES 및 글로벌 레코드에 관한 훈련 제공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구국과 기국 간 소통 및 협력 강화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히 정보교환에 있어서 RFMO/A들과의 협력 강화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도국들의 PSMA 이행 지원을 위한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제공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시아 지역 내 PSMA 훈련센터를 설치하고 공식 인증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시아 지역 내 모범 관행 공유를 위한 포럼 개발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워크숍이 PSMA 이행 관련 정보교환 및 다른 국가들의 이슈 이해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색관의 역량 및 지식 향상이 효과적인 PSMA 이행을 위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1-2 제35차 식량농업기구(FAO) 수산위원회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35차 식량농업기구(FAO) 수산위원회(COFI)
(회의명 영문) 35th Session of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isheries Committee
- 일시/장소 : 2022.9.5.~9.9(5일)/화상회의
- 의장 : Mr. Ota Shingo(일본)

2. 참석규모

- 참가국 : 126개 회원국, 국제기구, NGO 등 약 500명
- 우리나라대표단 : 수석대표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 김현태 외 9명

II 회의결과

1. 세계 수산양식 현황 및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 이행 경과

- 2022년도 ‘세계 수산양식 현황(SOFIA)’ 발간을 치하하고,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색 전환(Blue Transformation)을 강조함
- SOFIA가 세계 수산양식 부문의 유일한 고품질 표준 발간물임을 확인하고, 제2차 UN 해양컨퍼런스(6.27~7.1) 고위급 행사를 통해 SOFIA가 공개되어 광범위한 홍보가 이루어진 점을 치하함
- 지속가능 수산양식의 달성을 위한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의 역할을 강조하고, 동 규범의 채택 이후 이루어진 이행 성과를 인식하면서,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이행 노력 필요가 강조됨



2. 소규모 어업 지원 및 국제 영세 수산양식의 해(IYAFA) 기념

- 지속가능한 영세어업의 보장을 위한 자발적 지침(SSF 지침)의 이행 관련 FAO 및 파트너들의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하고, SSF 지침이 SDG 달성 및 건강한 식량시스템에 기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FAO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함
- 2022 국제 영세 수산양식의 해(IYAFA) 활동 성과에 대해 FAO를 치하하고, COFI 세션 직전 개최되는 고위급 특별행사가 소규모 어업에 관한 약속 및 권고를 종합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임을 강조함

3.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 근절

- IUU 어업 규모 추정 방법론에 관한 사무국의 추가적인 지침 문서 준비와 IUU 어업 근절 성과를 평가하고 추적하기 위한 지표 사용을 환영하고, IUU 어업 영향 추정에 관한 새로운 지침 문서를 기대함
- 선박 추적 관련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회원국 기술 워크숍을 시작할 것을 FAO에 요청하고, 동 워크숍 결과를 새로운 어업관리 소위에서 다룰 것을 요청함
- FAO 글로벌 레코드(GR) 버전2의 출시를 환영하고, 회원국들이 자국 선단에 관한 정보를 업로드 및 업데이트함으로써 GR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참여를 요청함
- 2022년 6월 17일 WTO에서 IUU 및 IUU 지원 활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한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고, 본 이슈를 다루기 위해 FAO 회원국들이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함
- FAO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의 틀 내 새로운 도구인 '전재에 관한 자발적 지침'을 수용하고 RFMO/A들을 통한 지침 이행을 요청함

- IUU 어업 및 관련 사안에 관한 FAO/ILO/IMO 공동작업반 위임사항 개정안을 수용하고, 본 작업반 결과가 모든 회원국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FAO 사무국이 절차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이 언급됨
- 어선 마킹에 관한 변화된 상황 및 통일성 부족을 고려하여, 'FAO 어선 마킹 및 식별 표준사양(1989)'을 업데이트할 필요성과, 업데이트를 위한 비용, 편익, 의미 분석 및 관련 절차 시작을 FAO에 요청함
- FAO 이행협정(1993) 이행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를 환영하고, 동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 및 집행 강화 방안 마련을 요청함

4. 어업관리 소위원회 설립 제안서 작업반 권고

- 어업관리 소위원회 설립 제안 작업반의 제안서를 검토하고, 작업반 제안대로 COFI 어업관리 소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함
- 특히 개발도상국의 재정적 및 행정적 부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이 강조되었고, 한 회원국이 표명한 재정기여 의사를 환영함
- 작업반 제안대로 어업관리 소위와 기존 소위 간 회의 순환을 환영함
- 제38차 COFI('28)에 의한 검토 과정을 환영하고, 검토를 위해 가용한 시간이 너무 짧을 수 있다는 우려가 표명됨
- 기존 소위들과 중복을 방지하고 어업관리 주요 사안들에 관한 심층 화가 가능하도록 의제의 우선순위 및 균형의 필요성이 강조됨
- 어업관리 소위 논의를 위한 위임사항에 합의함



5. 수산양식 관련 글로벌 및 지역 협의체 논의 경과

- 회원국들이 유엔 공해어업협정(UNFSA)에 관한 비공식 협의 및 유엔 총회결의 76/71(2021.12.9.)에 따른 UNFSA 검토 회의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UNFSA 제7부 지원기금에 대한 후원을 장려함
- 국가관할권 이원해역 해양생물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BBNJ)의 협상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적 조언 및 관련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것을 FAO에 장려함
- FAO 헌장 제14조 기구*인 아시아태평양수산위원회(APFIC)의 임무, 성과 및 미래 존속에 대해 진행 중인 검토에 대해 FAO가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함

* 특정 지역 식량 농업 사안을 다루기 위해 총회에서 채택된 협정에 의해 설립된 기구

- 어선 안전 및 노동에 관한 FAO/ILO/IMO 공동작업반의 노력을 환영하고, 회원국 및 국제기구들이 본 이슈들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것을 요청하고, 모든 회원국들이 ILO 어선노동협약(C188) 및 IMO 케이프타운협약(2012)을 비준하고 이행할 것을 장려함

1-3 제68차 국제포경위원회(IWC) 총회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68차 국제포경위원회(IWC) 총회
(회의명 영문) The 68th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 일시/장소 : 2022.10.17.~10.21(5일)/슬로베니아
- 의장 : Mr. Andrej Bibič(슬로베니아)

2. 참석규모

- 참가국 : 미국, EU 등 88개 회원국 대표단, NGO 등 약 400명
- 우리나라대표단 : 수석대표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심수빈 외 2명

II 회의결과

1. 남대서양 보호수역을 위한 부표 개정 논의

- (제안 내용) 남대서양 고래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지정 지역에서 원양조업 또는 육상에 서의 어떠한 포경 활동을 금지할 것
 - (찬성국) EU, 인도, 코스타리카, 호주, 멕시코, 미국, 한국, 에콰도르, 파나마
 - (반대국) 안티가바부다, 세인트 루시아, 아이슬란드, 베냉, 노르웨이

- (주요 의견)
 - (아이슬란드, 베냉) 금어기가 유지되는 상황에 보호 구역은 불필요
 - (노르웨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님. 부수어획률이 높은 고래류의 보호에 도움 되지 않아 반대
 - (안티가바부다, 세인트 루시아) 포경 활동이 주요 경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보호 구역으로 인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 활동을 방해하고 고래관광이라는 새로운 경제 활동을 일으키는 것은 WTO 규정 위반임
- (논의 결과)
 - 의제 논의 당시 반대국*들이 회의장 참석을 거부하여 quorum** 미성립 유도하였음
 - * (반대국 17개국) 안티가, 베냉, 캄보디아,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가나, 기니, 아이슬란드, 키리바시, 라오스, 라이베리아, 모리타니, 모로코, 나우루, 팔라우, 세인트 루시아, 솔로몬 제도
 - ** (Rules Of Procedure B.1항) Attendance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constitute a quorum
 - 회의 참석자에 대한 quorum 성립에 대하여 분명하게 정의하기 위해 Rules of Procedure 개정 필요성 의견 제기

2.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결의 수립 논의

- (제안 내용) 해양 쓰레기 작업반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고 과학위가 해양 오염에 대해 데이터 수집 및 연구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에 대한 결의
 - (찬성국) 인도, 뉴질랜드,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파나마, 베냉, 라이베리아 등
- (주요 의견)
 - (노르웨이) 재정적 한계가 있는 시점에서 과학위의 과업 추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함
- (논의 결과) 만장일치로 제안서 채택

3. 식량 안보에 대한 결의 수립 논의

- (제안 내용) 회원국의 식량 안보 및 생계의 보장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고려할 것에 대한 결의
 - (찬성국) 모로코, 솔로몬, 라이베리아, 세인트 루시아,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안티가 바부다
 - (반대국) 영국, 브라질, 한국, 뉴질랜드, 도미니카 등
- (주요 의견) 다수의 회원국은 상업적 포경 활동을 식량 안보의 개념으로 인식할 수 없어 반대 의견 표명
- (논의 결과) 회기간 중 논의 지속하여 IWC69에서 다시 논의할 것

4. 고래 금어기 해제 이후 포경 보존관리 전략 수립 논의

- (제안 내용) 고래 금어기 이후 위원회가 RMP를 수립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할 수 있는 특별 작업반 수립할 것
 - (찬성국) 노르웨이
 - (반대국) 호주, EU, 인도, 영국, 아르헨티나
- (주요 의견)
 - 다수 찬성국들은 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포경을 관리하는 것이며 포경 금지를 위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포경 관리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
 - 다수 반대국들은 moratorium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회복을 이룰 수 있었던 점을 강조하며 포경 재개에 대하여 반대 입장 표명
 - (호주) 세계적 측면에서 고래고기 소비율이 낮아 포경 관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며 손해일 것



- (일본) 고래류가 식용 및 과학적 연구를 위한 해양 자원인가 보호 개체인가에 대한 인식 차이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논의 결과) IWC69에서 논의 지속 할 것

5. 투표권 관련 논의

- (논의 내용)
 - 기존 투표권의 경우 분담금을 체납한 경우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음
 -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이후 세계 경제가 위기를 직면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경제 불황기를 겪고 있어 분담금 납입이 어려움
- 개발도상국은 여러 경제적 난항으로 분담금을 체납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투표권까지 박탈당하여 의사결정에 배제되는 것이 불합리하며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의 의견이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적 상황에 대하여 일부 개발도상국들 불만 제기
- (논의 결과)
 - 예외 상황을 부여하여 일정 기간에 분담금을 체납하여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의
 - 코로나19를 예외 상황으로 인정하여 2020-2022년 분담금 체납한 국가들은 IWC68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음
 - 코로나19 이전부터 체납한 국가들은 해당 사항 없음

1-4

130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산위원회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130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산위원회(COFI)
(회의명 영문) 130th Session of the OECD Fisheries Committee
- 일시/장소 : 2022.11.27.~11.28(2일)/화상회의
- 의장 : Mr. Bjorn Asgard(스웨덴)

2. 참석규모

- 참가국 : 28개 회원국 대표자, 국제기구 등 약 50명
- 우리나라대표단 : 수석대표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심수빈 외 2명

II 회의결과

1. 2022 수산정책 동향보고서

- 사무국은 2022 수산정책 동향보고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회원국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함

* 1) 평가 자원 2/3는 상태가 양호 2) 1/3의 자원은 TAC에 의해 미관리 3) OECD 국가들과 개도국의 정책 조합은 상이 4) 감시·감독·통제 부문 지원 증가가 자원관리에 기여



○ 주요 의견

구분	주요 의견
호주	• 보고서 내 IUU 정의를 국제행동계획 상 IUU 정의 외 회원국 국내 및 다른 부문들에서 사용하는 IUU 정의도 포함 필요
뉴지	① 회원국이 작업에 기여하는 방법은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하는 것 ② 위험기반 접근 분석을 '더 좋고 나쁘고'의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됨 (위험이 낮은 정책이 위험을 전혀 초래하지 않는 것은 아님)
EU	① 보고서 내 일부 수치(예, EU 수산보조금)는 통계적 효과에 의해 왜곡된 측면이 있음 ② 입어약정 지원은 입어 국가의 자원관리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미국	• 불특정 보조금은 WTO 작업 내용이 아니므로 정의 관련 어려움 야기
일본	① 보조금의 위험별 구분법에 이의. (예, 고위험 보조금으로 분류된 항구 접근 지원 보조금은 해상 전재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 ② 입어약정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정부가 아닌 어업자들이 지불함

2. WTO 수산보조금 협정 합의

- WTO 사무국에서 보조금 협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위원회가 협정 이행 및 WTO 작업에 기여하는 방안을 논의함

- * 1) 보조금 협정 주요 구성 : ① 금지 보조금 ② 허용 보조금 ③ 통보 및 투명성
2) 협정의 범위에 양식 부문은 제외
3) 보조금 금지 대상 어업 : IUU 어업, 초과어획 상태 어업, 미규제 공해어업
4) 'IUU', '초과어획 상태'에 대한 정의는 연안국, 기국, RFMO에 의해 결정
5)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의 통보 조항 내용을 수산보조금 협정에 도입
6) WTO 분쟁해결절차가 수산보조금 협정에도 적용
7) 협정 이행 관할을 위한 기구 설립 예정
8) 협정 적용 유예기간 2년. 발효 요건은 회원국 2/3의 비준
9) 초과어획 부문에 대한 논의는 다음 각료회의까지 진행. 미타결시 협정은 자동 폐기

○ 주요 의견

구분	주요 의견
뉴지	• 위원회가 WTO 작업을 위해 데이터를 넘어 기술적 지원 제공 필요
콜롬비아	• OECD와 WTO의 데이터 수집 조화 필요 • 초과어획에 대한 연구, 어획과 전재에 관한 보조금 유형 파악 필요
코스타리카	• 위원회가 특히 개도국들의 협정 이행 지원을 위한 대책 강구 필요
노르웨이	• 협정의 IUU 정의가 불분명함. 자국은 ‘기국의 국내법 및 국제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나, 타국은 보다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함. 국내법으로 처벌된 후 WTO 협정에 의해 보조금까지 금지되는 것은 이중 처벌 우려 있음
미국	• 위원회 작업이 WTO 작업을 보완해야 하고 중복 방지 필요 • IUU 데이터 제공 등 협정 진전을 위해 WTO와 협업 필요

3. 새로운 OECD 법적 도구 개발

- 위원회 임무 갱신 과정의 일환으로, 수산위원회에서 새로운 OECD 법적 도구* 개발 필요성과 위원회 검토를 위해 상정된 2개 제안서**에 대한 작업계획을 논의함

*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서 모범 정책 및 관행을 확인하고 공동목적과 의지를 담은 문서

** 1) 보조금 협정 이행 지원을 위해 IUU 보조금 근절 방안 모색 (뉴지 제안)

2) 선박 소유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칠레 제안)

〈OECD 법적 도구 유형〉

채택 주체		OECD 이사회	도구 가입국
구속성	구속적	결정 (24개)	국제협정 (10개)
	비구속적	권고 (178개)	선언 (32개)



○ 주요 의견

구분	주요 의견
미국	① 권고를 위원회 역할 부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에 지지 ② IUU 근절에 모두가 공감하고, 선박 소유 투명성은 IUU 근절에 기여
일본	• IUU 보조금 반대는 모두가 공감하나, 보조금 협정의 이행 어려움을 아직 모르므로 협정 이행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
한국	• 선박 소유 투명성 관리 기준은 타 국제기구 및 국내법 기준과 조화 필요
사무국	① OECD는 작지만, 작은 기구의 작업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② OECD 법적 도구가 타 기구 도구에 영향을 미친 사례들도 있음 ③ 작업 시작 후 WTO에 긍정적일 수 있도록 작업 속도 조절 가능

○ 향후 작업계획

- (IUU 근절) 뉴지의 편딩으로 사무국에서 권고 형식의 표준안 개발 작업을 시작하고, 전 과정에 회원국의 참여 및 최종 결정 필요
- (선박 소유) 외부 편딩*이 가용하므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를 법적 도구로 형성하는 등 활용은 회원국의 논의·결정사항

* 1)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호주 자선단체 2) OECD 외부 편딩 심사 절차 적용

제 2 장

지역수산기구

• 제10차 남태평양지역수산기구(SPRFMO) 연례회의	26
• 제1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EMS 작업반 회의	35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패널2 회기간 회의	38
• 제26차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연례회의	45
• 제10차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할당기준 기술위원회 회의	53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패널1 회기간 회의(1차)	56
• 제6차 남인도양수산위원회(SIOFA) 이행위원회 회의	61
• 제9차 남인도양수산위원회(SIOFA) 당사국회의	65
• 제7차 WCPFC NC-IATTC 합동 작업반	68
• 제100차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연례회의	74
• 제44차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연례회의	80
• 제18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기술이행위원회	82
• 제18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북방위원회	88
• 제17차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이행위원회	93
• 제29차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연례회의	97
•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ICCAT) 패널1 회기간 회의(2차)	101
• 제41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연례회의	106
• 제23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특별회의	112
• 제19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연례회의	124
• 제19차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연례회의	129



2022 | 국제수산협상
해외수산협력센터 | 연간 백서



2-1 제10차 남태평양지역수산기구(SPRFMO) 연례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10차 남태평양지역수산기구(SPRFMO) 연례회의
(회의명 영문) 10th Meeting of the SPRFMO Commission
- 일시/장소 : 2022.01.18.~01.28(9일)/화상회의
- 의장 : Luis Molledo(EU)

2. 참석규모

- 참가국 : 15개 회원국 대표단, CNCP, NGO 등 약 100여명
- 우리나라대표단 : 수석대표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김근령 외 14명





II 이행위원회 주요 논의 결과

1. 보존관리조치 주요 미이행 사항

- 시험조업 보존관리조치(CMM 13-2021) 위반 사항 2건

국가	위반 내용 및 기국 이행 절차	논의 상세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국 선박이 보고기간 중 트롤 어업으로 Alfonsino(BYS)를 어획하였으며 항구 검색 보고에 따르면 ~2,618톤이 양륙되었으나 사무국은 10년간 협약 수역 내 Alfonsino 어획에 대한 기록이 없어 시험조업으로 간주하였음 - (EU) 해당 선박은 전갱이 어업을 위해 허가된 선박이었으며 본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 후 시험조업이 아닌 위반 사항임을 파악하여 해당 선박주에게 패널티 부과하였음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기국 선박은 pelagic 어구를 활용하여 alfonsino(BYS)를 어획한 것으로 보고 되었음. 항구 검색 보고에 따르면 ~1,092톤이 양륙되었음 - (러시아) alfonsino 부수어획에 대한 사항을 사무국에 제출하였음. 해당 기국 선박은 전갱이 목표 어획중에 있었으며 alfonsino 어획은 부수어획이었음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루, 미국 등 해당 사항에 대한 깊이 우려하였으며 부수어획 정도가 아님을 강조하였음 • 과학위가 전달받은 자료로는 당장 설명이 어려우며 부수어획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부수어획인지에 대하여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해당 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Ⅲ 총회 주요 논의 결과

1. 전갱이 보존관리조치 논의

○ (논의 배경)

- 2021년 보존조치 10항에 따라 전갱이 TAC는 782,000톤수로 설정되었으나 현재 까지의 월별 보고서에 따라 보고된 총 어획량은 757,332톤수(총TAC의 96.8% 수준)임
- 전갱이 어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TAC 증가 및 연장(rollover)에 대한 과학위의 권고*가 있었음
 - * 2021년 어획 결과에 대한 예비적 추정치에 따르면 2020년과 비슷한 양상의 쿼터 초과 어획(3%)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높은 자원풍도 예상치와 분명하게 낮은 어획 사망률 비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해당 초과 어획의 영향은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 권고하였음
- 2022년 900kt 이하의 전반적인 전갱이 범위의 어획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15% 증가를 권고했음
- 2021년 전갱이 보존조치 표2의 어획 한도 국가별 비율은 올해 검토될 예정이었으나 HoD 회의에서 이 비율을 연장할 것을 합의함
- 2021년 보존조치의 28항에서 위원회는 과학위에게 전갱이 어업에 대한 국내 조치의 잠재적 영향에 대하여 조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는 관리 전략 평가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정리하였음

○ (주요 의견)

- (페루) 자원량 보존 등의 이유로 보존조치의 개정을 찬성하지 않음

○ (논의 결과)

- 투표(찬성: 13개국 / 반대: 페루 / 불참: 쿠바)로 채택



2022년 전갱이 어획 제한

- 1항에 따라 CMM에 적용되는 수역의 전갱이 총 어획 제한 : 817,943

5항

회원국/CNCP	톤수
칠레	581,074
중국	57,129
쿡 아일랜드	0
쿠바	2,008
에과도르	11,374
유럽연합	54,977
페로 아일랜드	9,978
한국	11,543*
페루(HS)	18,256
러시아	29,543
바누아투	42,064
총	817,943

* 한국 2021년 : 10,027톤수

10항

- 회원국 CNCPs는 전갱이 회유 경로 내 2022년 전갱이 어획량이 900,000톤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과학위의 권고를 고려하여 이에 동의한다.

2. 대왕오징어 보존관리조치 논의 (어획 노력)

- (논의 배경) 중국은 과학위의 권고에 따라 예비적 접근에 기초한 대왕오징어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며 개발 연안국이 협약 수역 내 어업을 더욱 확대 또는 개발하기 위하여 선박 수 및 총톤수를 제한하는 어획 노력 제한을 제안

과학위 권고

- 오징어 어업의 어획 노력은 선박 척수 및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된 채낀기 선박의 총 톤수가 제한되어야 하며 각 회원국은 SPRFMO 선박 기록부에 기준 날짜에 따라 오징어 어업의 목적으로 허가된 선박을 확인한다. SC는 연안국이 SPRFMO CMM과 일관되게 대왕 오징어 어업을 채낀기 또는 기타 어구를 사용하여 확대 및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notes)

○ (제안서 내용)

상 세

- (2bis) 2020년 12월 31일부로 오징어 채낚기 어업 선박으로 위원회 선박 기록부에 허가된 선박이 있는 회원국 및 CNCPs는 협약수역 내 오징어 어업이 허가된 자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선박 척수와 총톤수(GT)를 표1에 명시되어있는것과 같이 제한 시킨다.
 - 회원국 및 CNCP는 각 회원국 및 CNCP별 선박 수 및 총 톤수 수준이 표에 기록된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선박을 교체할 수 있다.

〈표 1〉

허가 선박 제한	중국	한국	대만	총
선박 수	671	30	45	746
총톤수	644,820	27,464	45,499	171,183

노력
관리

- (2ter)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오징어 어업을 위한 선박이 위원회 선박 기록부에 등록되어있지 않지만 협약 수역에서 대왕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대한 과거 기록이 있는 회원국 및 CMNCP는 대왕오징어 어업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회원국 및 CNCP는 오징어 자원 상태를 고려하고 해당 국가의 가장 높은 과거 기록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협약 수역내 대왕오징어 어업이 허가된 자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총 톤수 및 대왕오징어 선박 척수를 제한한다.
- (2quater) 위원회는 협약 수역 내 대왕오징어 어업 과거 기록이 없는 회원국 및 CNCPs이 협약 수역 내에서 대왕오징어 어업 개발을 허용할 수 있으며(may) 이는 SPRFMO CMM과 일관되게 이루어져야한다. 해당 회원국 및 CNCPs는 대왕오징어 선박의 척수 및 총 톤수를 제안하여 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받는다.
- (2quinquies) 상위 단락에도 불구하고, 개발 연안국의 경우 협약 수역 내 대왕오징어 어업을 개발 또는 확장 할 수 있으며 (may / should be able to) SPRFMO CMM과 일관되게 이루어져야하며 선박의 척수 및 총톤수에 대하여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
- (2sexies) 위원회는 늦어도 2024년 회의 또는 대왕오징어 자원 평가 완료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에 과학위의 권고에 따라 2bis, 2ter, 2quater, 및 2quinquies를 검토한다.
- (2septies) 본 CMM은 향후 할당량 결정에 선례로 고려되지 않는다.



○ (주요 의견)

- (한국) 본 제안서는 대왕오징어 자원량 보존을 위한 것인데 어획 노력을 추가시키려는 제안(2ter+2quarter)는 제안서의 목적과 맞지 않음을 우려하였음
- (한국) 만약 모든 회원국에게 동등한 어획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현재 어획을 하고있는 회원국에게도 동일한 기준인 ‘과거 기록에 따른 제한 설정’을 추가시켜 동등하게 기회를 제공해주길 어필하였으나 EU, 미국, 대만이 반대함
- (한국) 추가될 어획 노력으로 인한 대왕오징어 자원량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 평가 없이 본 제안서를 논의할 수 없음
- (미국) 과거 어획 기록이 있는 회원국에게 과거 기록에 따른 어업 기회를 주는 것은 동의함
- (칠레) 개발 연안국에게 협약 수역내 오징어 어업 기회를 증가시켜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안서 찬성
- (에콰도르) 어업을 개시하기 전 ‘사전 통지(prior notification)’를 위원회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함 표현

○ (논의 결과) 합의점 도출 실패로 미채택

3. 대왕오징어 보존관리조치 (옵서버 커버리지)

- (논의 배경) 에콰도르는 전장 15m 이상 선박에 대하여 승선 옵서버 커버리지의 점진적 증가로 어획된 대왕오징어어업 규제 및 추적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안
- (주요 내용)

상 세

- 대왕오징어 어업에 참여하는 회원국 및 CNCPs는 자국 국기를 게양하고 전장 24m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옵서버 커버리지를 20퍼센트를 보장하며 해당 옵서버들이 CMM 02-2020(데이터 기준)에 명시된 데이터를 수집 및 보고한다. 옵서버 커버리지는 하기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 a. 2022년 5월 1일까지 5%
 - b. 2023년까지 20%
 - c. 2024년까지 35%
- 과학위원회는 보고서의 결과를 검토하여 2025년까지 위원회에 권고할 것

- (주요 의견)
 - (중국) 현재 과학위에서 옵서버 커버리지를 어느정도 올려야한다는 구체적인 권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현재 논의할 필요성 느끼지 못함
 - (대만) CMM 16-2021에 일관된 옵서버 커버리지 기준인 것인지? 전장 24m 이하의 선박을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 제기함
 - (뉴질랜드) 제안서 지지하며 알바트로스와 같은 바닷새 조우에 대한 이해 위해 지속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함
 - 위원회의 권고 차원에서 이행위 및 과학위가 전자식 모니터링이 위원회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할 것인지에 대한 권고를 제공해주길 요청함
 - 위원회는 제10차 과학위에서 대왕오징어 어업에 적절한 수준의 옵서버 커버리지에 대한 권고를 제공해주길 요청함
- (논의 결과) 합의점 도출 실패로 미채택



4. 기타 보존관리조치 개정 논의

○ 채택 보존관리조치

보존조치	분류	주요 내용	주요 의견
CMM 05 (선박 기록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4항) 각 회원국 및 CNCPs는 협약 수역 내 조업 허가를 받은 자국 선박 기록부를 관리 해야한다. •(5항) 회원국 및 CNCPs는 협약 수역 내 조업 허가를 받은 자국 선박 기록부상 각 선박에 대하여 본조치 부속서1에 명시된 데이터를 수집해야한다. •(6항) ~회원국 또는 CNCP는 사무국장에게 본 조치의 부속서1에서 요구된 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위원회의 선박 기록부에 유효하게 포함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12항) 사무국장은 제출이 의무화된 정보를 제공 받은 선박만 위원회 선박 기록부에 포함 시켜야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의무적으로 제출이 필요한 정보 및 부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구별하여 회원국이 제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하길 바람
CMM 02 (데이터 기준)	개정	- 날짜 업데이트	이견 없음
CMM 17 (해양오염)	개정	- 날짜 업데이트	이견 없음
CMM 14b (통발 시험어업)	개정	- 랩스터 산란 기간으로 구체적 기술	이견 없음
CMM 03 (저층 어업)	개정	•검토 일정을 2023년으로 설정하며 2024년 UNGA의 저층 어업 검토에 따른 신규 정보에 집중할 것	•(미국) VME 등 저층 어업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함
CMM 07 (항구 검색)	개정	•CMM 07-2021 부속서1에 단어를 추가하여 입항 요청서에 작성된 양은 “추정치”로 간주되게 함	이견 없음
CMM 16 (옵서버 프로그램)	개정	•옵서버 프로그램 인가 절차 1년 연장	•(국) 모든 회원국이 기회를 제공받기 위하여 1년 내 인가를 받지 않는 회원국이 있더라도 다음 회원국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개정해야할 것

○ 기타 미채택 제안서

제목	제안국	주요 내용	주요 의견
CMM 12 (전재)	에콰도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 전재에서 대왕오징어를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현재 전재 이행에 대한 문제 언급된 것 없어 이 개정 필요 없음
페루 옵서버 대체 프로그램	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루의 영세어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5m 이하 선박에 대한 옵서버 대체 프로그램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 보존관리조치 형식 또는 옵서버 프로그램 보존조치의 부속서 형식으로 갖춰서 내년에 다시 논의하길 희망
2022년 상업적 음향 조사 시험어업 제안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fonsino 및 redbait에 대한 상업 음향 조사 진행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레) 본 extractive 조사 활동의 transparent framework가 부족하여 지지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표명함

2-2 제1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EMS 작업반 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전자감시시스템(EMS) 작업반 회의
(회의명 영문) ICCAT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Working Group Meeting
- 일시/장소 : 2022.2.28(1일)/화상회의
- 의장 : Mr. Neil Ansell(EU)

2. 참석규모

- 참가국 : 21개 회원국, 옵서버 등 약 120명 참석
- 우리나라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심수빈 사무관 외 5명



II 회의 결과

1. 과학위원회 보고

○ 주요내용

분류	상세 내용
작업 경과	• 새치류 작업반 내 EMS 소작업반이 수립되어 연승에 초점을 두고 작업 중 ('21년, '22년에 화상회의 각 2회 개최)
장·단점	• EMS는 반복 시청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우선순위 관찰(특정 유형 데이터의 수집)은 어려움
초기평가	• EMS는 데이터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지만, 사람 오피서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 가능
향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AI, 알고리즘 기술 개발 - 데이터 수집의 정확성·계속성이 보장될 수 있는 최소기준 마련 - 목적(이행/과학)에 따른 구분과 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 수집 보장 - 특정 유형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은 특정 위치에 카메라를 추가 설치, 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해결 모색 <li style="padding-left: 20px;">* 연골류의 성별, 어류 방류시 생존/사망 상태 등
작업계획	①향후 과학위 EM 작업반은 5-6주 주기로 회의 개최, ②사람 오피서버와 EMS에 의한 수집 데이터를 비교하여 최소기준(카메라 개수, 위치 등) 제안

2. EMS 시범사업

○ CPC 시범사업 수행 경과보고

- (일본) 3개 회사의 시스템을 6척의 선박에 설치. 직면한 어려움 : ① 원인 불명, 수리 불가능한 오작동들을 확인(→ 단순한 시스템의 필요성) ② 긴 항차 기간으로 비용 문제 발생
- (미국) 국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문서 소개 : ① 미국은 '15년부터 모든 연승선에 EM을 요구 중 ② EM의 목적은 이행감시로, 서부 참다랑어와 청상아리를 위해서만 사용 중



- (EU) ① EU 내 어업을 대상으로 양륙 감시를 위한 시범사업 수행 중 ② 참다랑어 1차 이전*시 시를 이용한 어류 체중 추정 시범사업을 계획 중으로, 올해 연례회의에서 승인받아 수행 예정

3. EMS 이행전략 개발 및 우선순위 마련

○ 주요 의견

- (미국) ① 우선순위는 열대다랑어·새치류 권고의 요청*에 답하는 것 ② '16년에 제시된 과학위의 선망에 관한 권고도 작업에 포함 필요

* 연승선에서 사람 오피서버를 대체하는 데이터 수집 방안으로서의 EM 최소기준 수립

- (캐나다) ① 시범사업들에 대한 본 작업반의 역할은 지시나 승인이 아닌 경과를 듣고 제안을 하는 것 ② EM 운영 주체가 상이할 경우, 역량·기술의 차이로 일관된 이행에 어려움 발생 우려 ③ 잠정적인 EM 표준을 수립한 후, 검토·수정해 가는 방안을 제안

- (EU) ① 본 작업반은 EM의 기술적 측면과 이행적 측면을 연결하는 것이 목적 ② 과학 목적을 위한 EM 작업은 (과학위에서)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으므로, 통제 목적을 위한 최소기준 작업 필요

- (의장) ① 권고 21-22에서 EM에 관한 논의가 IMM을 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논의 절차는 : 본 작업반 → IMM 회의 → PWG에서 결의·권고안 마련 → 위원회가 되어야 함 ② 어업별 적용될 EM의 선택은 각 패널의 관할

2-3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패널2 회기간 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패널2 회기간 회의
(회의명 영문) ICCAT Intersessional Meeting of ICCAT Panel 2
- 일시/장소 : 2022.3.1.~3.4(4일)/화상회의
- 의장 : Mr. Ota Shingo(일본)

2. 참석규모

- 참가국 : 16개 회원국, 옵서버 등 약 120명 참석
- 우리나라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심수빈 사무관 외 6명





II 회의 결과

1. 조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 2022년 한국 조업계획서 주요내용
 - (쿼터) 260톤* (혼획 유보 쿼터 0.5톤 포함)
 - * 초기 쿼터 200톤 + 대만 전배 50톤 + '21년 미소진 쿼터(11.557톤) 이월 10톤
 - (조업선) 3~4척 * '18~'21년 3척(사조산업 2, 동원산업 1) 조업
 - (어기/어장) '21.9.1~'21.11.30 / 서경 10도 이서, 북위 42도 이북 해역
 - (최소크기) 체중 30kg 미만 또는 가랑이 체장 115cm 미만
 - (VMS) 매 2시간 한국 FMC 및 ICCAT 사무국에 송신
 - (어획보고) 과학원 및 FMC에 일일 보고, 사무국에 격주 보고
 - (전재) 다카, 카보베르데 또는 케이프타운 입항 전재
 - (옵서버) 조업일수 20% 이상 승선·관찰
 - (기타) GBYP 일환으로 옵서버에 의한 태깅 수행 2020년

○ CPC 조업계획서 주요내용 2020년

CPC	조정 쿼터(t)	혼획 쿼터(t)	조업선	어기	비고
알바니아	177.5	1	선망 1	5.26 ~ 7.1	• 미소진 이월 8.5톤
알제리	1650	5	선망 31	5.26 ~ 7.1	• 재정 문제로 검색선 미파견
중국	101	1	연승 2	9월말 ~	• 옵서버 승선 50% 이상 달성 계획 • 전재항구 : 카보베르데, 다카 또는 라스팔마스
이집트	326.7	3.3	선망 3	5.26 ~ 7.1	• 기상 악화 시 어기 10일 연장 요청
EU	18,642	633.32	선망 69 연승 196 채낚기 74 손낚시 60 트롤 57 통발 13 소형 1041 기타 74	선망 : 5.26 ~ 7.1 *아드리아해 : 5.26 ~ 7.15	• 조업국(8개) : 스페인,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몰타,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 레저 쿼터 135.95톤 • 공동파견계획에 따른 통제 검색 활동(해상 299일, 항공 57일) 실시
아이슬란드	215	10	연승 2	8.1 ~ 12.31	• 상업적 어류 폐기 금지 (양륙 의무) • 30kg 미만 어류 어획 사례 없음
일본	2900.65	1	연승 40	8.1 ~ 1.31	• 미소진 이월 96.65톤 • 사망폐기 유보 14톤 • 외국 항구에서 양륙 금지
한국	259.5	0.5	연승 4	9.1 ~ 11.30	• 미소진 이월 10톤 • 전재항구 : 카보베르데, 다카 또는 케이프타운
리비아	2235	20	선망 15	5.26 ~ 7.1 * FAO 37.3.1,2 : 5.15 ~ 7.1	• 기상 악화시 어기 10일 연장
모로코	3308.65	444.65	통발 18 선망 4	5.15 ~ 7.1 *모로코 해역 : 5.1 ~ 6.15 *통발 조업 : 4.1 ~ 7.31	• 미소진 이월 24.65톤 • 축양장 3개 운영 (투입량 2,884톤)
노르웨이	282	15	선망 8 소형 25	6.25 ~ 11.15	• 미소진 이월 15톤 • 레저 쿼터 7톤, 연구 쿼터 18톤, 태깅·방류 쿼터 3톤
시리아	79.2	0.8	선망 1	5.15~7.1	• 회의 불참, 서면 채택
튀니지	2653.17	26.55	선망 54	5.26~7.1	• 기상 악화시 어기 10일 연장 • 국내 과학 옵서버 승선 10%
터키	2270	35	선망 30	5.15~7.1	• 축양장 6개 운영 (투입능력 2,792톤)
대만	40	0	-	-	• 한국에 50톤 전배
영국	48.4	20	-	-	• 상업적 목표조업 금지 • 태깅 방류 프로그램 수행



○ 검색선 파견

- (지적사항) EU는 21-08 230항* 요구인 검색선 파견에 대해 질문

* 참다랑어 조업선이 동시에 15척을 초과할 경우 다음 중 1개를 실시 : ①검색선 파견 ②타 CPC와 공동으로 검색선 운영 ③위험평가를 토대로 대안적 조치 실시

- (알제리) 재정 문제로 파견계획이 없고, 타 CPC와 공동운영할 계획임

- (일본*) 외국항구에서 참다랑어 양륙이 금지되고 국내에서 100% 양륙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불법 참다랑어가 유통될 가능성은 희박

* 일본은 '19년 이전에는 검색선을 파견했으나, 일본 해역에 외국어선 출몰이 증가하여 대서양에 검색선 파견이 어려워졌고, 동 조항에 ③을 제안하여 합의됨(18-02)

○ 크로아티아 축양장 불법 혐의

- (사안) 크로아티아 축양장에서 불법 혐의가 발견되어 EC에서 조사가 진행('22.2)된 후, 확인된 사실 및 초기 평가에 대해 크로아티아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 (크로아티아가 불복할 경우, 재판 절차 진행)

- (일본) ① 일본은 크로아티아에서 참다랑어를 수입하고 있으므로 크로아티아 축양장에 대한 통제가 보장되지 않으면 조업계획 승인 불가 ② 크로아티아와 타 EU 회원국 조업계획을 분리하여 승인 필요

- (미국) 타란테로 사건* 조사도 아직 종결되지 않아 EU의 불법어획 규모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EU의 미소진 이월 허용에 의문

* '18년에 확인된 몰타 축양장에서 행해진 대규모 참다랑어 불법 반출 사건

- (EU) ① 잠재적인 불이행과 조업계획 승인을 연결하는 것은 선례가 없음. 불이행은 연례회의 논의사항 ② 본 논의의 아이러니는, EU는 타 CPC들에게는 없는 엄격한 내부절차가 있음으로 인해 오히려 더 엄격한 취급을 받고 있는 점 ③ 현 시점에서 EU법에 의해 허용되는 것 이상의 정보 제공은 불가

- (의장) 보고서에 본 사안의 논의 내용을 기록하고 EU 조업계획 승인

○ 노르웨이해역 어획율(catch rate) 면제

- (사안) 노르웨이는 자국 해역 참다랑어 자원량을 고려하여 SCRS에서 마련한 선단별 어획율 면제를 요청*

* 노르웨이는 '19년 패널2 회의에 자국 해역 참다랑어 자원 및 조업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 과학위 및 패널2 회의에서 본 사안에 관해 미논의

- (EU) 노르웨이가 제출한 연구결과가 과학위 승인을 받기 전까지 노르웨이에 대한 어획율 적용 면제 여부는 매년 검토 필요

- (과학위) 패널2 요청이 있으므로 과학위 작업계획에 포함시키겠음

2. 기타 의제

○ '살아있는 참다랑어 저장' 도입 (노르웨이)

- (논의배경) 노르웨이는 작년 연례회의에 '살아있는 참다랑어 저장(storage)*'에 관한 개념 문서를 제출한 후, 회기간 추가 논의를 위해 '저장' 개념을 21-08에 도입하는 개정안**을 본 회의에 제출

* '축양(farming)'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품질 유지, 판매 기간 연장을 위해 살아있는 참다랑어를 저장 가두리에 최대 3개월까지 보관

** '살아있는 참다랑어 저장', '저장 가두리' 정의 추가, 저장 수행·통제 계획안 마련

- (EU) ① '저장'은 결국 기존 권고 상 '1차 이전'에 해당하므로 '저장' 용어 도입은 불필요 ② 축양이 이루어지면 축양에 관한 통제절차 적용이 필요하고, 먹이 활동이 수반되지 않는 활동만 고려될 수 있음 ③ 가두리 활동 통제에 관한 기존 조항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배제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필요 ④ 21-08 개정이 아닌 별도의 권고로 제안하는 접근을 선호



- (일본) ① 육질 개선을 위한 냉각 기간은 1-2주로도 충분하고, 보다 긴 기간 동안 먹이 활동이 수반되면 통제절차가 복잡해질 것 ② 21-08뿐만 아니라 eBCD 권고 개정도 고려 필요
- (미국) ① 가두리 활동에 적용되는 조항들을 면제시킬 이유 없음 ② 미국에서도 적절한 시장가격을 위해 출하량을 조절하고 있지만 ‘저장’을 하고 있지는 않음
- (의장) 노르웨이는 21-08 개정안이 아닌 별도의 제안서를 준비하고 회기간 서면 논의 진행

○ 축양장 성장률 모니터링 (일본)

- (논의배경) 일본은 작년 연례회의에 축양장 내 성장률 추정방법 개선*에 관한 개념 문서를 제출한 후, CPC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념을 보다 구체화한 제안서**를 본 회의에 제출

* 현재의 성장률 추정방법에 대한 일본의 문제 제기 : ① 과학위 마련 성장률(’09년)에 해역별 편차가 미고려 ② 과학위 마련 체장-체중 공식은 일부 해역 어류를 과소평가 ③ 스테레오 카메라에 의한 체장 측정시 자의적으로 어류가 선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성장률 업데이트 작업 중(~23년), AI를 통한 체장-체중 산출 검토 중, 일본은 성장률이 의문시되는 수입 참다랑어에 대해 수출국과 양자 협의 수행)

** ① 축양 CPC들은 축양장 성장률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패널2에 보고 ② eBCD를 통해 수출 참다랑어에 관한 정보를 모든 CPC들에게 제공 ③ (중기) eBCD를 통한 자동적인 성장률 산출로 비정상적인 성장률을 시스템적으로 확인

- (EU) ① 일본과 양자적으로 하고 있는 절차를 다자적으로 중복해서 하는 것은 불필요 ② 과학위의 성장률 업데이트 작업이 완료되면 비정상적인 성장률 사례는 감소할 것
- (의장) 회기간 서면 논의 진행

3. 관리전략평가 경과

○ 논의배경

- '23년 이후 참다랑어 TAC를 수립하기 위한 예비관리절차(CMP)* 개발 경과를 보고하고 관리자·과학자 간 의견 교환 진행

* 관리절차(Management Procedure) : 사전 합의된 규칙에 따른 TAC 수립절차. 보다 사전예방적인 자원관리 방식 (↔협상에 의한 TAC 합의)

○ 주요 논의내용

- 개별 과학자(들)이 개발 중인 9개 CMP 주요 요소·시뮬레이션 설명
- 관리주기 간 TAC 감축율(20%) 및 TAC 최대한도를 무제한으로 변경*
 - * ① 자원상태 악화시 20% 이상의 TAC 감축을 통해 보다 신속한 자원회복 달성 가능 ② 과학위 작업반에서 최대한도 설정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
- CMP 시뮬레이션에서, 자원상태가 호전될 경우 서부 TAC가 보다 신속하게 상향되고, 자원상태가 악화될 경우 동부 TAC가 보다 급격하게 하향되는 것은 동부 계군의 상대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것

○ 향후 일정

- (5.9~10) 2차 MSE 회의에서 수정된 CMP 보고 및 최종 작업목표 합의
- (9월) MSE 작업반과 SCRS 회의에서 패널2에 보고할 CMP 선정(1~3개)
- (10.14) 3차 MSE 회의에서 총회에 보고할 최종 CMP 선정(1개)
- (11월) 총회에서 작업 관리목표를 포함한 최종 MP 채택

2-4 제26차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연례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26차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연례회의
(회의명 영문) 26th Session of the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 일시/장소 : 2022.5.8.~5.20(12일)/빅토리아, 세이셸
- 의장 : 김정례 (한국)

2. 참석규모

- 참가국 : 30개 회원국, CNCP, 옵서버 등 약 120명 참석
- 우리나라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심수빈 사무관 외 16명



I 회의 결과

1. 황다랑어 회복계획 보존관리조치 논의

- (논의 배경) 결의를 반대하는 6개국*의 지속적인 어획량 증가(50%)로 모든 회원국의 자원량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불가피해짐

* 인도네시아, 인도, 이란, 마다가스카, 오만, 소말리아

- 몰디브와 EU가 제안서 제출

몰디브	EU
<p>(어획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 어획량 또는 '17-'19년 평균 어획량 5,000t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 21% → 40% - (개도국) 12% → 27% - (최빈국) 10% → 22% • '14년 어획량 5,000t 이상 & '17-'19년 평균 어획량 10,000t 이하인 원양조업국 : 13% (우리나라 변경없음) • '14년 어획량 5,000t 미만 & '17년-'19년 평균 어획량 2,000t 이상 5,000t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 0% → 15% - (개도국) 0% → 6% - (최빈국) 0% → 5% • '14년 어획량 5,000t 이하 & '17-'19년 평균 어획량 2,000t 이하: 어획한도 2000t → 1000t <p>(FAD 금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7-9월) • FAD 금어기 15일 전부터 FAD 투척 금지 • FAD 금어기 간 DFAD 인근 5마일 내에서 작업 금지(선망선, 지원선, 공급선) 	<p>(하부위원회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다랑어 관련 하부위원회 신설하여 '23년 개정 대비하며 논의사항(Terms of Reference) 마련 <p>(동료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다랑어 자원평가에 대한 독립적 동료 평가를 수행



○ (어획 제한)

- (EU 등) 21/01 결의를 반대한 6개국이 제안서를 찬성하지 않는 한 감축에 대한 논의의 무의미함 어필
- (인도네시아) 사무국과 인도네시아 간 데이터 차이 문제로 TAC 설정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어필하였으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황다랑어 어획제한 결의를 지지할 수 없음 주장
- 다수 반대 국가의 경우 대부분 영세어업의 형태의 어업인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며 개발도상국이 어획을 제한하는 개념 자체를 반대함
- 소말리아의 경우 TAC 설정 기준 자체를 불신함

○ (황다랑어 하부위원회 신설)

- 남아공 등 하부위원회가 황다랑어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제한시킬 것을 우려하여 하부위원회보다는 특별 세션이나 작업반 형태를 지지하였음

○ (논의 결과)

- 6개의 반대 국가들의 지속적인 반대 및 협상 의지 부족으로 제안서 철회함
- 회기간 중 반대국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의견차를 좁힐 것에 회원국 동의하였음

2. 대형 어선 전재 프로그램 보존관리조치 개정 논의

○ (논의 배경)

- ICCAT의 선례를 따라 전재 활동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공급 신고서’를 도입하는 등 관련하여 일본이 제안서를 제출
- 인도네시아의 목재 운반선의 추가 전재 허용을 위한 개정안 제출
- 한국은 조업선 간 전재를 위한 부속서 개정을 제안하였음

○ (논의 내용)

- (일본 제안서) 영국과 EU 등 전재활동 규제 강화에 대하여 중요성 인지하며 일본의 제안서 지지하였음
- (인도네시아 제안서) EU는 인도네시아의 목재 선박의 추가 전재 요청 제안서에 대해 지속적으로 선박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우려 표명하였으며 인도네시아 기국 선박 간의 전재로만 한정시킬 수 있도록 제안서 수정 요청하였음
- (한국 제안서*) 영국과 EU는 한국이 제안한 문구로 인하여 IUU 어업 활동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지지할 수 없음 표명

* 연승선간 전재시 선박 검색을 의무화하고 사무국에 보고하는 등 규정을 강화시켜 위원회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IUU 어업의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시킬 수 없어 지지를 얻을 수 없었음

3. 눈다랑어 MP 수립을 위한 논의

- (논의 배경) 2011년부터 논의되어왔던 관리전략평가(MSE) 개발 및 수립의 작업 계획에 따라 2022년 위원회는 TCMP가 제안한 관리절차(Management Procedure, MP) 옵션 중 선택할 것을 고려해야하며
- 2021년 과학위에서 눈다랑어 MP에 대한 기술적 작업이 충분히 진행됨에 동의하였으며 위원회에 눈다랑어 자원량의 MP를 선택할 것을 알림
- (논의 결과) 과학위 및 TCMP에서 제시한 옵션 MP1, MP2 모델의 자원량 회복 차이 및 눈다랑어 산란자원량이 목표기준점을 도달할 가능성 60% 또는 70% 모두 비슷한 결과를 예상하고있어 큰 반대없이 MP1의 60% 가능성 모델이 채택됨



4. 가다랑어 보존관리조치 개정 논의

○ (논의 배경) 가다랑어 자원량 관리를 위해 설정된 어획통제규칙(HCR)에 따르면 21-23년 총어획량은 513,572톤이나 지속적으로 초과어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어획 제한이 불가피해짐

- 논의를 위하여 몰디브 및 EU가 제안서 제출

몰디브			EU	
(어획한도)			(총 연간 한도)	
	분류	감축률 (’20년 대비)	• ’20년 어획량이 어획한도 1%를 초과하는 국가는 ’23년에 어획량 감축	
’20년 어획량 50,000t 이상	원양조업국	20%	CPCs	감축분 (Mt)
	개발도상연안국	10%	EU	108.930
	소도서개발도상국 최빈국	4%	인도네시아	114.186
’20년 어획량 20,000t ~50,000t	원양조업국	10%	인도	17.852
	개발도상연안국	5%	이란	40.997
	소도서개발도상국 최빈국	2%	한국	9.898
’20년 어획량 10,000t ~20,000t	원양조업국	5%	몰디브	95.659
	개발도상연안국	2%	모리셔스	8.492
	소도서개발도상국 최빈국	1%	세이셸	69.518
’20년 어획량 5,000t ~10,000t	원양조업국	3%	스리랑카	34.707
	개발도상연안국	2%		
	소도서개발도상국 최빈국	1%		
’20년 어획량 5,000t 이하		800t 혹은 ’20년 어획량 중 높은 어획량 이상 어획 금지		

○ (논의 내용)

- (한국) '21년도 어획량도 포함할 것을 어필하였음
- 다수 연안개발도상국들은 연안개발국 및 SIDS에게 부과되는 어획제한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하며 반대함

○ (논의 결과) 다수 국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EU와 몰디브가 각각 제안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나 합의점 도달하지 못하고 철회함

- 인도와 이란 등 연안개발도상국이 어획 제한에 반대함
- EU와 몰디브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함

수정된 제안서 상세 내용

몰디브			EU																				
(어획한도)			(총 연간 한도)																				
	분류	감축률 (’20년 대비)	• ’20년 어획량이 어획한도 1%를 초과하는 국가는 ’23년에 어획량 감축 - 80,000t 이상 → 9% 감축 - 30,000t 이상 80,000t 이하 → 6% 감축 - 30,000t 이하 → 4% 감축 (한국)																				
'20년 어획량 50,000t 이상	원양조업국	14%	<table border="1"> <thead> <tr> <th>CPCs</th> <th>감축분 (Mt)</th> </tr> </thead> <tbody> <tr> <td>EU</td> <td>107,635</td> </tr> <tr> <td>인도네시아</td> <td>105,669</td> </tr> <tr> <td>인도</td> <td>18,610</td> </tr> <tr> <td>이란</td> <td>41,845</td> </tr> <tr> <td>한국</td> <td>10,318</td> </tr> <tr> <td>몰디브</td> <td>94,522</td> </tr> <tr> <td>모리셔스</td> <td>8,852</td> </tr> <tr> <td>세이셸</td> <td>70,957</td> </tr> <tr> <td>스리랑카</td> <td>35,425</td> </tr> </tbody> </table>	CPCs	감축분 (Mt)	EU	107,635	인도네시아	105,669	인도	18,610	이란	41,845	한국	10,318	몰디브	94,522	모리셔스	8,852	세이셸	70,957	스리랑카	35,425
	CPCs	감축분 (Mt)																					
	EU	107,635																					
	인도네시아	105,669																					
인도	18,610																						
이란	41,845																						
한국	10,318																						
몰디브	94,522																						
모리셔스	8,852																						
세이셸	70,957																						
스리랑카	35,425																						
개발도상연안국	9%																						
소도서개발도상국	5%																						
최빈국	5%																						
'20년 어획량 20,000t-50,000t	원양조업국	10%																					
	개발도상연안국	5%																					
	소도서개발도상국	2%																					
	최빈국	2%																					
'20년 어획량 10,000t-20,000t	원양조업국	5%																					
	개발도상연안국	2%																					
	소도서개발도상국	1%																					
	최빈국	1%																					
'20년 어획량 5,000t-10,000t	원양조업국	'19-’20년 평균 어획량 또는 20년 어획량을 초과하지 않음																					
	개발도상연안국																						
	소도서개발도상국																						
	최빈국																						
'20년 어획량 5,000t 이하		4,000t 또는 20년도 어획량을 넘지 않으며 해당 국가들의 총 어획량이 24,000t을 초과하지 않음																					



5. FAD 관리를 위한 보존관리조치 개정을 위한 논의

- (논의 배경) FAD 어업으로 인한 황다랑어 치어 사망률의 증가로 FAD 관리가 강화되어야 하는 상황임
- 케냐가 FAD 금어기, DFAD 등록부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24분 늦어 제안서 형태로 논의할 수 없게 됨
- 케냐가 제안한 부분은 조사 보고서(Working paper) 형태로 재제출하고 EU와 합의하여 일부 내용을 추가시켜 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합의하였음

※ 제안서 내용

EU		케냐 등	
(DFAD 한도)		(DFAD 등록부)	
한번에 작동가능한 최대 부이	300개	→	2023.1.1. 이후 280개 2025.1.1. 이후 260개
선망선이 매년 획득할 수 있는 최대 부이	500개	→	한번에 작동 가능한 최대 부이의 2배를 넘지 않아야 함 2023.1.1. 이후 560개 2025.1.1. 이후 520개
(생분해성)		(DFAD 개수)	
분류	생분해정도	• 한번에 최대 150개 초과 금지하고 각 국은 자국의 DFAD 개수를 발표 할 것	
카테고리 I	계측부이에 사용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FAD의 모든 부분(뗏목, tail, 부유 요소)이 생분해성 재료로 만들어짐	(FAD 금어기)	
카테고리 II	부유 요소와 계측부이를 제외한 모든 요소가 생분해가능	• FAD 금어기 15일 전부터 FAD 투척 금지하며 FAD 금어기 간 DFAD 인근 5마일 내에서 작업 금지함	
카테고리 III	tail, 기타 매달린 부분은 생분해가능 뗏목은 생분해되지 않는 재료	(DFAD 모니터링)	
카테고리 IV	FAD의 모든 부분이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분해되지 않는 재료로 사용	• 위원회는 FAD 개수 이행을 원활히 감시하기 위하여 DFAD-MS를 2023년 1월 1일까지 수립할 것	
• 카테고리 I, II, III의 DFAD만 사용하며 카테고리 IV DFAD 배치 불가, '25.1.1일부터 I과 II의 DFAD만 사용할 것		• 각 국은 DFAD 위치를 DFAD-MS에 실시간으로 보고하도록 할 것(6시간 단위)	
• 카테고리 I의 DFAD를 사용하는 선박은 최대 부이 한도 10%를 더하여 배치 가능		(공급·지원선)	
		• '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지원선을 운영을 줄이고 연간 보고서에 감축 현황을 포함시킬 것	
		• '22년 12월 31일 이후 공급·지원선 운영을 금지함	

- 논의 내용 - FAD 금어기
 - 다수 연안개발도상국 FAD 금어기 필요성을 강력하게 어필
 - 한국, EU 등 주요 조업 국가는 적절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FAD 금어기에 대하여 반대 의견 강력하게 표명
- (논의 결과)
 - EU와 케냐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EU가 DFAD 등록부 추가하였고 DFAD 감축 사항을 추가한 수정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FAD 금어기를 추가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케냐와 남아공 등 연안개발도상국이 제안서를 반대하였음
 - (몰디브, 말레이시아) DFAD와 AFAD 관리가 구별되어야하며 그러한 이유로 보존관리조치가 각각 만들어져 채택해야한다고 주장하여 제안서 반대함

6. 2022 IUU 목록 논의

선박명	기국	IUU 이슈	결과
AVEMARIYA	I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허가 선박이며 어구마킹 부재 • 인도 정부의 등록된 선박이 아니라고 하나 선박에 인도 국기가 그려져 있음 • 해당 국가 소명 부족 	목록 추가
LITTLESHA			
NOVA			
YO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허가 선박이 협약 수역에서 어획하는 것 두 차례 발견
MANGALA	LK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등록 선박으로 IOTC 목표종 어획 • 프랑스령 EEZ 무단침입 • 스리랑카 국내적 재판 아직 진행 중 	목록 추가
ISRAR1	OM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CAT IUU목록에서 교차 등록 논의 • 선박 이전 소유주와 현재 소유주간의 무관함 설명 부족 	목록 추가
ISRAR2			
ISRAR3			

2-5 제10차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할당기준 기술위원회 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10차 IOTC 할당량기준위원회
(회의명 영문) 10th Meeting of the Technical Committee on Allocation Criteria(TCAC10)
- 일시/장소 : 2022.6.20.~6.23(4일)/빅토리아, 세이셸
- 의장 : Mrs. Nadia Bouffard (캐나다)

2. 참석규모

- 참가국 : 30개 회원국, CNCP, 옵서버 등 약 120명 참석
- 우리나라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심수빈 사무관 외 7명



II 회의결과

1. 할당 제도를 위한 의장 제안서 논의 지속

- 연안개발도상국 및 SIDS와 조업국 간의 합의점 도달 실패
- 연안개발국은 지속적으로 EEZ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할당 제도 원칙(Principle) 부분에도 연안국의 권리를 명시하길 요청하였음
 - (연안국)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와 UN Fish Stock Agreement(UNFSA)에 따라 연안국의 EEZ는 연안국의 권리하에 있으며 그 수역 내 이루어지는 모든 어획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조업국) 할당 기준일 뿐이며 연안국의 권리에 대한 것은 원칙 부분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할당 기준에 대한 논의
 - (조업국) EEZ에서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어업을 하였으며 모든 어업 권리는 선박의 기국에게 있음
 - (일본) 과거 어획을 100퍼센트 인정해주긴 어려우나 XX%를 논의할 의향 있음 표명
 - (인도, 방글라데시)* 연안개발국의 과거 어획에 대하여 제대로된 데이터가 없어서 과거 어획 기록으로 어획 제도를 구성하는 것은 불공평함
 - * 해당 연안개발도상국의 경우 EEZ 어업 라이선스를 판매하지 않은 국가들로 연안국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어획량이 거의 없음
 - (연안국) 과거 및 향후 EEZ에서 어획되는 모든 어획량(기국 상관없이) 해당 연안 국가의 어획량으로 간주되어야함
 - (호주, 인도네시아) 과거 어획 기준이 아닌 새로운 기준이 공해와 EEZ에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서 측정 되어야 하며 새로운 측정방식 제시할 예정



- 과거 어획 기준연도
 - (모리셔스) 어업 데이터를 제대로 기록한지 얼마 되지 않아 2016년도 이후의 연도도 어획 기준에 넣어주길 요청
 - 최신 연도로 설정하게 되면 이를 악용하여 초과보고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좀 더 논의 필요할 듯
- 심각한 미이행에 따른 할당 자격 논의
 - (연안국) 분담금 미지불은 할당 제도와 상관없는 것으로 관련 요소를 넣는 것 반대

2. 관찰 및 평가

- G16으로 뭉친 연안국의 기세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조업국의 권리만 주장하기보다는 기브-앤-테이크 전략을 구상해야 할 필요 있음
 - EEZ에서의 과거 기록에 대한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되 연안국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연안개발국들과 가깝게 대화 이어가야 함
- 일본은 조업국의 향후 연안국의 EEZ 내 어획량을 연안국의 권리로 인정하거나 과거 어획량의 XX%를 연안국에게 넘겨줄 의향을 표명한 것으로 보아 한국 또한 연안국의 권리를 인정하는 모습을 일정 보이면서 조업국의 어업 권리를 충분히 누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관찰됨

2-6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패널1 회기간 회의(1차)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패널1 회기간 회의(1차)
(회의명 영문) 1st Intersessional Meeting of ICCAT Panel 1
- 일시/장소 : 2022.6.28.~6.30(3일)/폰타델가다, 포르투갈
- 의장 : Mr. Paul Bannerman (가나)

2. 참석규모

- 참가국 : 36개 회원국, 8개 NGO 약 350명 참석
- 우리나라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심수빈 사무관 외 2명





II 회의결과

1. 눈다랑어 TAC

○ 논의 배경

- '21년 자원평가 결과 호전 후, 연례회의에서 TAC 증가가 제안되었으나 자원상태 불확실성을 이유(아프리카CPC, 미국 등)로 미합의
- 연안개도국 어획 할당 증가를 위해 금년에 다시 TAC 증가가 제안*
* (2022년 TAC) 62,000톤 (일본, 서아프리카) 70,000톤 (EU) 75,000톤 (중미) 77,500톤

○ 논의 경과

- 과학위 의장은 자원평가 미래 전망치*는 주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
* 자원상태가 2028년/2034년에 Kobe 플롯 녹색영역에 있을 가능성 : TAC 70,000톤일 경우 81%/82%, TAC 75,000톤일 경우 70%/64%
- 한국, 일본, 미국, 남아공, 브라질은 자원상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사전예방적 수준의 TAC(70,000톤) 수립을 주장
- EU는 자원상태 전망치 70%도 ICCAT 타 어종과 비교하여 높은 수치이고, 사전예방적 접근은 과학위 평가에서 이미 고려되었음을 언급
- 중미CPC들은 위원회 자원관리 목표는 전망치 50% 이상이고, 관리자들의 역할은 극단적인 위험회피가 아닌 위험관리를 강조
- 서아프리카CPC들은 연안개도국에 대한 추가 할당을 위해 TAC 75,000톤도 수용 가능함을 언급

○ 논의 결과

- 차기 자원평가('24년/'25년) 결과에 따라 TAC를 조정하도록 하는 문구(일본 제안)*를 추가하고 TAC 70,000톤과 75,000톤 모두를 옵션으로 하여 추후 논의 계속하기로 함
* 1) '24년/'25년 자원평가 결과 검토 시 '28년 자원상태 전망치 70%를 기준으로 하여,
2) '28/'34년 자원상태 전망치가 70%/60% 이상이 되도록 TAC를 증감
3) 70% 수치는 타 어종 대비 높은 수준임을 인식하고 향후 본 수치 재검토 가능

2. 눈다랑어 어획 할당

○ 논의 배경

- 권고 16-01까지 가나를 제외한 연안개도국들은 어획한도가 미수립되어 TAC 초과 ('17 ~'19년)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
- 권고 19-02(잠정 조치)에서 주요CPC 어획한도 감축 및 신규 설정
- 연안개도국들에 대한 할당을 고려하는 새로운 어획 할당안이 제안

※ 제안서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일본	• 61,500톤 초과량은 연안개도CPC들에게 할당, 7만톤 초과량은 비례적 할당
EU	• 16-01 3항 CPC들은 3항을 시작점으로 논의, 연안개도CPC들을 위한 할당 설정
서아프리카	• 어획량 큰 CPC들의 어획한도 감축, 연안개도CPC들의 어획한도 증가
중미	• '16-'19년 평균어획량 1,000-3,500톤인 CPC들의 어획한도 증가

○ 논의 경과

- EU와 중국은 19-02에서 감축된 어획 한도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16-01 3항 CPC들의 어획 한도 논의 시작점은 16-01 수치가 되어야 함을 주장
- 일본은 TAC가 증가할 경우,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인 감축은 수용 불가함을 언급
- 연안개도국들은 조업기회 불공평이 계속되어 왔고, 연안개도국들의 어업개발을 위한 공평한 할당이 주어져야 함을 주장
- 미국, 캐나다, 영국은 소규모 어획국의 어업개발 고려 필요를 언급

○ 논의 결과

- 의장안에서 각 제안서 요소들을 괄호로 두고 추후 논의 계속



3. 어획한도 이월 및 전배

○ 논의 배경

- 현재 이월과 전배는 16-01 3항 CPC*에게만 허용

* (7개) 일본, EU, 대만, 중국, 가나, 한국, 필리핀

- 연안개도국들은 연안개도국들에 대한 어획한도 추가 할당을 위해 미소진 어획한도의 이월과 전배 제한을 지속적으로 주장

※ 제안서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EU	•(이월) 16-01 3항 CPC만 기본 어획한도 10%까지 허용
서아프리카	•(이월) 자원상태가 녹색 영역에 도달할 때까지 금지 •(전배) 같은 그룹 내 또는 아래 그룹 CPC에게만 가능
중미	•(이월) ① 예외적 상황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 ② 어획한도 10% 이상 미소진 CPC만 가능 ③ 이월한도 : 500톤 또는 CPC 어획한도 25% ④ 이월 요청서 회람 후 10일 내 반대 CPC가 없을 경우에만 허용

○ 논의 경과

- 일본은 이월과 전배는 어획 할당 합의를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언급하고, 이월 비율은 최근 권고들에서 계속적으로 감축되어 추가적인 감축은 수용 불가함을 표명하였고, 한국, 중국, 대만도 이에 동의
- 일본과 EU는 연안개도국의 어업개발을 위해서 연안개도국은 새롭게 할당받은 어획 한도를 전배할 수 없도록 해야 함을 언급
- 중미CPC들은 연안개도국의 어업개발을 위해서 조업할 계획이 없을 경우 할당을 부여해서는 안되고, 미소진 어획한도 전배 금지를 주장

○ 논의 결과

- 의장안에서 각 제안서 요소들을 괄호로 두고 추후 논의 계속

4. 기타 사항

○ FAD(어류군집장치) 금어기

- 일본은 TAC가 증가할 경우, 치어 어획량 유지를 위해 FAD 금어기를 3개월로 연장해야 하고, FAD 세트(투망) 수 제한 필요를 주장
- EU는 눈다랑어, 특히 치어 어획의 책임이 그동안 선망에게만 과도하게 가해져 왔고, 치어 목표 어업(서부 채낚기, 손낚시)과 눈다랑어 어획 비중이 가장 큰 연승에 대한 규제 필요를 주장
- 중미CPC들은 금어기 연장과 세트 수 제한은 수용 불가함을 언급

○ MCS(감시·감독·통제) 조치*

* 제안서 주요내용 : 지역옵서버 프로그램(ROP) 부활, 연승선 입항 전제(20%) 실시, 연승선 옵서버 승선을 상향(20%) 등

- TAC 및 어획한도 할당 합의 후 논의하기로 함

2-7 제6차 남인도양수산위원회(SIOFA) 이행위원회 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6차 남인도양수산위원회(SIOFA) 이행위원회 회의
(회의명 영문) 6th Compliance Committee
- 일시/장소 : 2022.6.29.~7.1(3일)/화상회의
- 의장 : Mr. Johnny Louys (세이셸)

2. 참석규모

- 참가국 : 10개 회원국 대표단 등 약 50여명 참석
- 우리나라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김근령 사무관 외 1명



II 주요 결과

1. 국가별 이행 사항 확인

미이행 조항	관련 국가	미이행 내용	논의 상세
CMM 2019/10(감시) 14항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수역 입출역 24시간 이내에 사무국에게 보고할 의무 미이행 •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 문제로 권한당국이 문제에 대해 통지를 받았을 때 이미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였으나 통지를 받은 즉시 사무국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했으므로 미이행으로 간주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쿽 등) 자동 보고 이외에도 수동적으로 통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미이행 • (논의 결과) 당사국 회의에서 논의 지속
CMM 2019/10(감시) 16항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선박이 전재할 경우 전재 옵서버 로그북을 권한당국이 옵서버가 제출한 후 15일 이내에 사무국에게 제출할 이행 사항 미이행 • IOTC 옵서버가 승선하기 때문에 IOTC 사무국에게 먼저 전달되고 그 이후 권한 당국에서 전달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로 기간 내 이행할 수 없음 어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 기구와 관련된 절차상 문제로 지속적인 미이행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노력 및 상황을 감안하여 “심각한 미이행”을 받아야 하지만 “미이행”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 • (논의 결과) 당사국 회의에서 논의 지속



2. CMM 2019/13(바닷새) 개정

- (주요 내용)
 - 해저 및 원양 어업 어구로 인한 알바트로스를 포함한 바닷새 부수어획 완화를 위한 개정
 - 과학위가 IOTC 12/06(연승어업의 바닷새 부수어획 감소를 위한 결의)와 일관되게 개정하도록 권고
- (논의 내용)
 - (중국) 관련 수역을 분명하게 명시하길 요청
 - SIOFA 선박 등록부에 따라 허가된 선박에 한정
- (논의 결과) 채택을 위하여 당사국 회의에서 논의 지속

3. CMM 2019/07(선박 허가) 개정

- (주요 내용)
 - IMO번호 취득 조건에 들어간 선박의 경우 그 번호의 취득을 의무화
 - IMO번호를 당장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예외 조항 추가
- (논의 내용)
 - (쿠) 추가된 4항에 대하여 IMO 번호는 선박 등록에 의무인데 획득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음
- (논의 결과) 당사국 회의에서 논의 지속

4. IUU 선박 목록 추가 논의

선박명	기국	논의 상세	결과
IMULA 1655 MTR	LK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 배경) SIOFA 허가 선박 목록에 미등록된 선박이 협약 수역에서 어업 • 기국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다량어 목표어획을 하고 있었으며 로그북 등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 EU에 따르면 제공된 로그북의 정보는 EU가 가지고 있는 AIS 정보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쿽의 경우 해당 선박이 SIOFA 목표어종을 어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추가 정보를 요청하였으며 스리랑카 정부가 직접 회의를 참석하여 소명하길 기대 • 일본과 중국의 경우 해당 선박들이 SIOFA의 소관이 아니며 IOTC에게 해당 선박에 대한 이슈를 전달하여 IOTC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임을 언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이 임시 IUU목록에 추가하는 것 반대하여 IUU목록 안에 두고 내년 회의때 스리랑카가 제공하는 추가 정보를 확인 후 결정
IMULA 17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 배경) SIOFA 허가 선박 목록에 미등록된 선박이 협약 수역에서 SIOFA 어종을 어업한 정황이 포착됨 • 현재 스리랑카 정부에서 해당 선박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 AIS 데이터에 따르면 분명하게 SIOFA 어종을 어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분명한 IUU어업으로 임시 IUU 목록에 추가할 것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 IUU 목록에 추가
IMULA 1844	M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 배경) 해당 선박이 SIOFA 협약 수역인 Saya de Malha Bank에서 어업을 하였으나 SIOFA 허가 선박 목록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선박으로 IUU어업으로 간주됨 • 모리셔스에 따르면 해당 해령(bank)은 모리셔스의 관할 수역이며 모리셔스 등록 선박으로 어업 허가를 받은 선박임을 어필 • 모리셔스는 역사적으로 해당 해령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이상 IUU 어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없음을 강력히 어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리셔스는 더 이상 Saya de Malha Bank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부터 해령에서 어업을 할 선박은 모두 SIOFA 허가 선박 목록에 등재시킬 것을 약속하였음
MARIAM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 배경) SIOFA 허가 선박 목록에 미등록된 선박이 협약 수역에서 SIOFA 어종을 어업한 정황이 포착됨 • 남아공의 정부가 해당 선박에 대하여 현재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IUU 목록 초안에 유지되길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쿽 등 몇몇 국가들은 해당 선박이 오랜 시간 동안 IUU 목록 초안에 등재되었음에도 아직도 요청했던 데이터 또는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해당 선박을 우선적으로 임시 IUU 목록에 추가하길 요청함
El Shaddai	ZA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 배경) SIOFA 허가 선박 목록에 미등록된 선박이 협약 수역에서 SIOFA 어종을 어업한 정황이 포착됨 • 남아공의 정부가 해당 선박에 대하여 현재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IUU 목록 초안에 유지되길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쿽 등 몇몇 국가들은 해당 선박이 오랜 시간 동안 IUU 목록 초안에 등재되었음에도 아직도 요청했던 데이터 또는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해당 선박을 우선적으로 임시 IUU 목록에 추가하길 요청함

2-8 제9차 남인도양수산위원회(SIOFA) 당사국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6차 남인도양수산위원회(SIOFA) 당사국회의
(회의명 영문) 9th Meeting of the Parties(MoP9)
- 일시/장소 : 2022.7.4.~7.8(5일)/레위니옹
- 의장 : Mr. Roy Clarisse (세이셸)

2. 참석규모

- 참가국 : 10개 회원국 대표단 등 약 50여명 참석
- 우리나라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심수빈 사무관 외 1명



II 회의결과

1. 현행 보존관리조치 개정

보존관리조치	채택 내용
<p>2021/02 데이터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Ps는 양망을 기준으로 선박의 조업 및 노력 데이터를 수집해야하나 핸드라인 어업은 예외로, 해당 CCP는 작업* 기준으로 선박의 조업 및 노력 데이터를 수집한다 * 작업이란 본 선박(dory 포함)의 일상 작업으로 어획은 일상 하루동안의 어획이며 노력은 하루당 작업한 어민의 수 및 하루당 조업된 줄의 수를 말한다.
<p>2019/07 선박 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조치에 명시된 정보가 모두 갖춰진 선박만이 SIOFA 허가 선박 목록에 추가될 수 있음 • IMO 번호 (IMO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 사무국장은 SIOFA 선박 등록부에 등재된 선박 중 필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기국을 확인하고 해당 선박들에 대하여 “incomplete”을 명시하며 2023년 4월 30일까지 해당 선박들에 대하여 필요 정보를 요청하며 2023년 6월 30일까지 관련 정보를 추가하거나 목록에서 삭제시킬 것
<p>2018/09 규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되거나 분실 또는 폐기된 어구의 회수할 의무에 대하여 핸드라인 어업은 예외되었음
<p>2019/12 상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OFA fisheries”라는 문구가 의미가 불확실하여 어업 자원 또는 조업에 관여한 경우로 수정
<p>2019/13 바닷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닷새 혼획 완화 노력 연승선에 저연승선에 원양 연승선을 포함 시킴 • 완화 조치 적용할 작업 수역을 남쪽25도로 한정



2. IUU 선박 목록 논의

선박명	논의 상세	논의 결과
IMULA 1844 MTR	•이행위 이후 선박 기국인 스리랑카 추가 피드백 없음	•IUU 목록 추가
EL SHADDAI	•이행위 이후 선박 기국인 남아공 추가 피드백 없음	•IUU 목록 추가
IMULA 1655, 1783	•이행위 이후 선박 기국인 스리랑카 추가 피드백 없음	•중국이 임시 목록 추가 반대로 임시 IUU 목록 유지

3. 국가별 이행 사항 논의

미이행 사항	기국	논의 결과
CMM 2019/10 14항	대만	•(미이행) 기국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였음을 어필하였으나 보존조치에 따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위원회 판단하였고 대만 인정하였음
CMM 2019/10 16항	대만	•(심각한 미이행) 중복 기구와의 이행 절차 혼선으로 생긴 문제이나 보존조치에 따라 2년 이상 미이행은 자동적으로 심각한 미이행이며 어떠한 상황에도 예외없음

2-9 제7차 WCPFC NC-IATTC 합동 작업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7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북방위원회(NC) 및 IATTC(전미열대참치위원회) 합동 작업반
(회의명 영문) Seventh Joint IATTC-NC Working Group Meeting on PBF Management
- 일시/장소 : 2022.7.12.~7.14(3일)/화상회의
- 의장 : Mr. Masanori Miyahara(일본, NC 의장)
Ms. Dorothy Kowman(미국, IATTC)

2. 참석규모

- 참가국 : WCPFC 및 IATTC 회원국 등 약 100여명 참석
- 우리나라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김근령 사무관 외 4명



II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CDS*) 작업반 논의 결과

* Catch Documentation Scheme

1. 자문(consultant) 고용 여부 논의

- (논의 배경) 지난 CDS WG 논의 중 PBF CDS 개발에 지침을 제공할 전문가 고용의 잠재적 이점과 함께 고용 가능성 탐색 제기
- (논의 내용) 일본, 멕시코 등 국가들은 WCPFC, IATTC 두 위원회로부터의 공동 예산 승인 등 문제로 자문의 즉각 고용이 어려움을 지적하며 반대
 - 멕시코는 IATTC 사무국이 실행하고 있는 열대성 다랑어 이력 추적 시스템*을 교본 삼아 PBF CDS 개발 시작을 제안하였으나,
 - * AIDCP Tuna Tracking System : 동태평양 다랑어 어업 중 돌고래에 영향이 있는 조업과 그렇지 않은 조업을 구분하여 다랑어 어획물의 이동을 추적하는 시스템
 - 의장은 참다랑어 합동작업반이 전자식 어획증명제도(eCDS) 개발을 추구하는 만큼 종이 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IATTC 시스템은 예시 모델로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였고,
 - 우리나라는 자문 고용 관련 IOTC CDS 작업반의 자문 고용 사례의 검토를 제안하였으며,
 - 일본은 현재 CDS를 운영하는 기구인 CCSBT와 ICCAT의 사무국을 자문으로 초청하여 PBF CDS를 개발하는 소작업반(SWG) 개설을 제안
- (논의 결과) 우리나라, 대만, 멕시코, 캐나다 등 국가의 참여 의사 표명과 함께 PBF CDS 소작업반 수립 확정
 - 동 PBF CDS 소작업반은 내년 2회 개최 예정*
 - * '23년 1~2월 중 1회, 차기 합동작업반(JWG008)과 함께 1회

2. PBF CDS 범위 및 기능(Scope & functions) 논의

(1) 이력 추적(Traceability)

- (논의 내용) 우리나라와 일본 등 국가는 이력 추적 개념을 PBF CDS에 도입할 시 나타날 수 있는 시스템의 복잡화 등에 우려 표명
 - 우리나라는 현행 CCSBT, ICCAT CDS의 수준을 넘어서는 조치의 도입에 반대하였고,
 - 일본은 본 요소의 포함으로 국제 거래를 넘어서 국내 거래에도 CDS가 적용될 가능성에 우려
- (논의 결과) 이력 추적 요소는 PBF CDS에서 제외 결정

(2) 감시·감독·통제(MCS)

- (논의 내용) 일본은 CDS가 이미 MCS의 개념을 포함한 제도임을 지적하며 CDS 본질에 논의 초점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고,
 - 우리나라는 MCS 개념의 보편성을 상기시키고 본 사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문구가 필요함을 지적
- (논의 결과) MCS 개념의 PBF CDS 미포함 결정



II 합동 작업반 회의 결과

1. 태평양 참다랑어(PBF) 국가 보고서

(1) 우리나라 PBF 수출입 데이터 누락

- 우리나라 국가 보고서 논의 중 일본은 우리나라의 '21년 수출입 데이터의 누락을 지적
 - 국별 데이터 비교는 태평양 참다랑어의 어획량 및 거래 상황 파악을 위해 향후 보고서에는 수출입 데이터를 제공해주기를 요청
- 우리나라는 '21년 수출입 데이터를 포함하여 국가 보고서 재제출

(2) 남태평양 국가 PBF 보고

- 미국은 쿡 제도가 적도 이북 수역의 PBF 어획량만 보고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들의 전체 WCPFC 수역의 PBF 어획량 보고 필요성 제기
 - 일본은 이에 동의하며 뉴질랜드도 쿡과 동일한 보고 문제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 ISC 참다랑어 작업반 의장은 최근 적도 이남에서 PBF 출몰이 증가하는 추세를 설명하며 적도 이남 수역의 PBF 어획량 보고 필요성 지지

(3) PBF 유어(recreational fisheries) 관리

- 일본은 유어 관리를 위한 국내법이 '21년부터 시행되었음을 합동작업반에 보고하였고,
 - 미국 국가 보고서에 동태평양 내 유어를 통한 PBF 어획량이 누락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유어의 어획량 비중 관련 데이터 제공을 촉구
- 미국과 일본은 다른 회원국에게 국별 PBF 유어 어획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정보를 향후 국가 보고서에 포함 요청

2. PBF 장기 어획전략(HS)* 논의

* 어획전략(Harvest Strategy, HS) : 어업 통제 방식을 사전에 합의하여 합의된 시나리오에 따라 자원을 관리하는 수산 관리법

(1) 미국 제안서 - PBF 잠정 관리목표 및 성과지표

○ (논의 배경) 미국은 ICCAT에서 대서양 참다랑어 관리를 위해 이용하는 네 가지 요소 (안전성, 상태, 안정성, 생산량)를 PBF 관리목표 및 성과지표 기준으로 채택 제안*

* 미국 관리목표 제안서 주요 내용

기준	관리목표	성과지표
안전성	• 자원량(SSB)의 한계기준점(LRP) 초과 확률 [5~20%] 이하	• SSB<LRP 확률
상태	• 75% 확률로 어획사망률(F)이 Ftarget 이하로 유지	• $F \leq F_{target}$ 확률
안정성	• 한 번에 어획한도 15% 이상 감축 금지 • 단, LRP 초과 확률이 50%인 경우는 예외	• 어획량 증가율 • 어획량 감소율 - 단, SSB<LRP의 경우는 제외
생산량	• 서태평양(WPO)과 동태평양(EPO)의 어업 영향을 '70년~'94년 비율로 유지	• 자원에 대한 WPO-EPO 어업 비율 • EPO 어업 비중이 '71년 ~'94년일 확률
	• 중·단기 생산량 최대화	• 5~10년 연평균 기대 생산량 • 10~30년 연평균 기대 생산량 • 특정 연도 연평균 기대 생산량

○ (논의 내용) 일본은 서태평양(WPO)과 동태평양(EPO)의 어업 영향을 관리목표 요소로 포함하는 미국 제안에 반대하였고,

- WPO-EPO 어업 영향은 추후 관리전략평가(MSE)* 결과 도출 후 이용될 어획량 할당 기준으로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였으며,

* Management Strategy Evaluation (MSE) : 사전 합의된 어획전략(HS)을 실행하기 전 예상 결과를 시험해 보기 위한 시뮬레이션 테스트



- 대만은 WPO-EPO의 비율의 기준연도를 미국이 제시한 '70~'94년보다 넓게 채용하여 PBF 어업의 최근 상황을 반영하기를 제안
- 미국은 WCPFC은 이미 PBF 어획전략(HS)을 채택하였고, 본 제안서는 PBF HS에서 합의된 내용에 기반해 만들어졌음을 설명하였고,
 - WPO-EPO 어업 영향의 균형이 합동작업반이 설립된 주요 이유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본 개념이 관리목표 요소로 포함되어야 하는 정당성 주장
- (논의 결과) 회원국 간 합의 도출 실패로 차기 합동작업반으로 논의 연기 결정

(2) 미국 제안서 - PBF 잠정 어획전략

- (논의 배경) 미국은 2차 PBF 회복 계획에 따른 자원 회복 후 적용할 잠정 어획전략을 제안*
 - * 미국 잠정 어획전략 제안서 주요 내용
 - 산란자원량(SSB)이 처녀산란자원량(SSBF=0)의 20% 아래로 감소할 확률이 60%인 경우, 확률을 60%로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 실행
 - SSB가 20%SSBF=0일 확률이 60% 이상일 경우 보존조치 개정 가능
 - 보존조치 개정 시 EPO-WCPO 어업 영향 고려
 - 자원평가 요소 변경 등으로 자원 고갈률 변경 시 HCR 검토 및 변경
- (논의 내용) 일본은 미국이 제안한 잠정 어획전략에 기간이 설정되어야 실행 가능함을 설명하고, '29년을 기한으로 제시
 - 기한 등 HS 요소에는 회원국 간 합의가 이뤄졌으나, 구체적 문구에 합의 도출 실패
- (논의 결과) 차기 합동작업반으로 논의 연기 결정

2-10 제100차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연례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100차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연례회의
(회의명 영문)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100th Meeting
- 일시/장소 : 2022.7.28.~8.5(9일)/피닉스(미국) 및 화상회의
- 의장 : Mr. Alfonso Miranda (페루)

2. 참석규모

- 참가국 : 회원국 21개국, CNCP(5개국), NGO 등 약 100여명 참석
- 우리나라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김근령 사무관 외 11명





II 회의결과

1. 2022년 IUU 목록 등재 논의

- Patricia Lynn(콜롬비아) 선박 불법 어업 정황 포착
 - IATTC 등록부에 미등록된 선박으로 에콰도르 EEZ에서 IATTC 관리 어종을 여러 차례 어업한 것 확인
 - 불법 어업한 기간은 2020년 9월~10월과 2021년 8월~9월로 나타났으며 콜롬비아에게 문제 제기한 것은 2022년 5월로
 - 현재 콜롬비아 권한 당국에서 선박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음
- (논의 결과) 콜롬비아는 해당 문제를 통지받은 즉시 조치를 취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문제 해결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여
 - IUU 목록 등재 관련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

2. 국가별 보존관리조치 이행 확인

- 이행위는 국가별 미이행 사항 다수가 정확한 타임라인 없이 조사 및 해결 중에 있는 점을 문제 제기하여,
 - 더 명확하게 국가별 이행 상태 및 조사 진행 타임라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EU의 이행 개선 절차를 위한 보존관리조치 개정이 이행위 및 위원회의 지지를 얻음

3. 채택 제안서

(1) 전채 (C-12-07) 보존관리조치 개정

조치명	채택 내용
<p>전채 (C-12-07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항) 사무국장은 공적으로 검색 가능한 해상 전채를 허가받은 LSTLFV에 대한 목록을 보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항) 해상 전채 허가된 운반선은 선박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VMS를 설치 및 가동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항) 12항의 사전 허가를 받기 위하여, LSTLFV의 선장 및/또는 선주가 전자식(예: 이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하기 정보를 기국 CPC 권한당국에게 예정된 전채 24시간 전까지 통지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기 정보를 전송할 때, LSTLFV는 해당 정보의 사본을 관련 연안 국가에게 (전채가 EEZ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제공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LSTLFV 선박명, LSTLFV 목록 번호, 선박 IMO 번호(자격 대상인 경우) b) 운반선명, IATTC 운반선 기록 번호, IMO 번호, 전채 예정 생산물 c) 전채될 어종별 및 생산물별 톤수 d) 전채 날짜 및 위치, 그리고 e) 다랑어 및 다랑어 유사어종 및 상어 어획의 지리학적 위치 - 관련된 LSTLFV는 기국 CPC에게 전채 후 늦어도 7일 이내에 IATTC LSTLFV 목록 번호와 함께 부속서2에 제시된 양식에 맞는 IATTC 전채 신고서와 완성 후 제출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항) 운반선의 선장은 전자식으로 IATTC 전채 신고서를 사무국장, LSTLFV의 기국 CPC 및, 적용되는 경우, 연안국에게 IATTC 운반선 기록 번호와 함께 전채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완성 후 전송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c항) 각 CPC는 사무국장에게 매년 9월 15일 전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TTC 선박 기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전채에 참여하는 선박 및 IATTC LSTLFV 목록에 있는 선박과 함께 전채된 어종별 톤수를 보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항) 본 결의는 IATTC 선박 기록에 등재되지 않은 선박의 전채를 효과적으로 허가, 감시 및 규제하기 위하여 2023년 연례회의에서 검토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항) 본 결의는 C-12-07를 대체하며 2023년 1월 1일부터 유효함



○ 세부 논의 내용

- EU는 운반선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CPC에게 귀속된 운반선만 해상 전채 작업을 가능하게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이 반대하였음

* FAO 전채 규정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사항으로 2023년에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내년도 재논의될 것

(2) 금어기 (C-21-04) 보존관리조치 개정

조치명	채택 내용
금어기 (C-21-04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항) 본 결의 3항에 규정된 금어기를 위하여, 각 CPC는 매년 7월 15일까지 사무국장에게, 금어기에 해당하는 선망선의 선박명을 통지하며 4항 및 5항에 따라 추가 금어기에 해당하는 선박명도 통지할 것. 5항에 따라 추가 금어기에 해당하는 선박들에 경우, 각 CPC는 매년 6월 15일까지 사무국장에게 알릴 것 • (14항) 금어기에 해당하는 선박이 같은 해에 “불가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해에 3항에 명시된 두 금어기 중 연속 40일의 감축된 금어기를 지키게 될 • 것이며, 이는 CPC가 늦어도 해당 년도 7월 15일까지 사무국장에게 통지할 것

(3) 북방날개 다랑어 보존관리조치 수립

조항	논의 결과
1.a	<p>관리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향후 10년간 최소 80%확률로 SSB를 한계기준점(LRP) 위에 유지 ii. 향후 10년간 총 자원량 감소를 과거 (2006-2015) 평균 감소 수준 유지 iii. 향후 10년간 최소 50%확률로 어획 사망률(F)를 목표기준점(TRP)에 유지 iv. 적용 가능한 한, 관리 변화(예: 어획 및/또는 노력) 향후 10년간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
1.b	<p>기준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Target Reference Point(TRP)=F45%SPR은 어획 사망률(F) 수준이 spawning potential ratio(SPR)의 45% 수준의 자원량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 ii. Threshold reference point(SSBthreshold)=30%SSBcurrent,F=0는 dynamic unfished 산란자원량의 30퍼센트 수준임을 의미 iii. Limited reference point(LRP)=14%SSBcurrent,F=0는 dynamic unfished 산란 자원량의 14% 수준임을 의미함
1.c	<p>허용 가능한 위기 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최신의 SSB 추정치를 기반으로 LRP를 위반할 수 있는 위기는 20%를 초과할 수 없음
1.d	<p>감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TTC 스텝은 ISC와 협업하여 북방날개다랑어의 정기적 자원 평가를 3년마다 수행 하며 1.b항의 기준점에 대하여 평가할 것
1.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량 평가를 진행할 때, IATTC 스텝은 ISC와 협업하여 생물학, 환경적 조건, 데이터 근원, 자원량 상태 및/또는 기타 근본적인 가정이 변경되어서 어획 전략의 요소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지 고려
1.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까지, 위원회는 그림1과 같이 북방날개다랑어 어획전략으로 어획 규제 규칙을 채택 할 것
1.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f에 따라 채택된 어획 규제 규칙은 북방날개다랑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조치들을 전반적으로 제시할 것
1.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g에 명시된 조치들은 가장 최신 어획 강도 위치 및 본 결의에 따라 수립된 기준 점에 따른 자원량 추정치에 따라 결정될 것
2	<p>기타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결의에서 채택된 어획 전략의 “기준점”의 정의와 향후 WCPFC에서 채택되는 북방날개다랑어 관련 어획 전략 사이에 양립성이 존재해야할 것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텝은 ISC와 협업하여 2023년에 예외적 상황 식별을 위한 기준을 개발 할 것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장은 WCPFC 사무국과 본 결의에 대하여 소통할 것



4. 미채택 제안서에 대한 논의

(1) 상어 (C-05-03) 보존관리조치

- 일본이 Fins attached policy를 반대하여 제안서를 반대하였음

(2) 연승선 과학 옵서버 프로그램 (C-19-08) 보존관리조치

- 연승선 데이터가 부족하여 옵서버 커버리지를 20%로 증가해야한다는 과학위 및 과학 스태프의 권고로 에과도르가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 연승선 어업 국가들과 합의 도출을 위해 점진적 감축 대신 2023년만 적용되는 보존조치 개정을 제안하였으나

2023년 1월 1일	10%	→	2023년 1월 1일	10%
2024년 1월 1일	20%			
2025년 1월 1일	50%			
2026년 1월 1일	100%			

- 다수 연승선 국가들이 연승선 옵서버 커버리지 증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며 개정을 반대하였음

(3) 남태평양 날개다랑어 보존관리조치 수립에 관한 논의 (신규)

- (중국) WCPFC에서 오랫동안 남태평양날개다랑어 어업 관리를 위해 논의하고 있으며 중북 수역과도 관련된 점을 감안하여 WCPFC의 결과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해당 어종을 어획하는 선박을 각각 구별하는 노력이 현재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어필하며 강력하게 반대

(4) 참다랑어 (C-21-05) 보존관리조치 개정

- 미국과 일본 등 몇몇 국가들은 참다랑어 관련 보존관리 조치의 경우 NC-IATTC 참다랑어 공동 작업반을 통하여 논의를 한 후 위원회에서 논의하길 요청하였음

2-11 제44차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연례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44차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연례회의
(회의명 영문) 44th Annual Meeting of Northwest Atlantic Fisheries Commission
- 일시/장소 : 2022.9.19.~9.23(5일)/포르투(포르투갈)
- 의장 : Ms. Deirdre Warner-Kramer (미국)

2. 참석규모

- 참가국 : 회원국 13개국, CNCP, NGO 등 약 100여명 참석
- 우리나라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심수빈 사무관 외 4명



II 회의결과

1. 과학위 권고 및 TAC 설정 논의

수역	어종	자원량 상태 및 과학위 권고	주요 논의 내용 및 결과
3M	대구 (C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도 TAC : 4,000톤 • 과학위 권고: 어느 어획 시나리오를 통해서도 총 자원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가정하였을 때, 60% 가능성으로 SSB 성장을 증진 시키기 위하여 Fsq를 넘지 않는 F를 권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어기 일정 유지 • (캐나다, 노르웨이) SSB possibility 75%, 예비적 접근 지지함 • (DFG) 6천톤 이상 제안함 • 결과: 6100톤 합의
3M	새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위 권고: 직접 어획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 결과: 직접 어획 금지 •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할당 비율 논의 시작되었으나 향후 지속 할 예정 • 연안국의 권리와 체약국의 권리 사이 논쟁
3LNO	가오리류 (Thorny Sk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위 권고 : 어획량은 일정하나 어획사망률에 회복력이 낮고 과거 자원량 수준은 더 높았던 것을 생각하였을 때 어획량 유지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 결과: 작년 수준 7,000톤 연장 • 총 어획량이 4,500톤을 넘는 경우 다시 논의할 것에 대한 내용 결의에 추가
3LN	적어 (Redfi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이후 데이터 부족 • 2022년도 TAC : 18,100톤 • 과학위 권고 : 어획은 최근 5년간 평균 어획 수준인 11,500톤을 넘지 않도록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 결과: 작년 수준 1년간 18,100톤 연장
3NO	가자미 (Witch Floun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도 TAC : 1,200톤 • 과학위 권고 : F는 2/3FMSY보다 높으면 안될 것을 권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 결과: 2023년 1,295톤, 2024년 1,367톤 합의
3O	적어 (Redfi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위 권고 : 적절한 권고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작년과 동일하게 3년 rollover • (캐나다) 3년 rollover 아닌 1년씩 제안 • 논의 결과: 작년 동일, 2023-2025년, 3년, 20,000톤 연장 합의
SA2 +3KL MNO	넙치 (Greenland halib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 상황은 발견되지 않음 • 과학위 권고 : 2023년 TAC는 15,156톤 권고 (2022년보다 5% 감소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 결과: HCR에 따라 15,156톤 결정
	오징어 (Northern Short fin Squ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 결과: 2023-2025년, 3년, 34,000톤

2-12 제18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기술이행위원회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18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기술이행위원회
(회의명 영문) 18th Regular Session of the Technical and Compliance Committee
- 일시/장소 : 2022.9.21.~9.27(5일)* / 화상회의
* '22.9.25.(일) 휴회
- 의장 : Ms. Emily Crigler (미국)

2. 참석규모

- 참가국 : 한국, 미국, FFA, 일본 등 WCPFC 회원국 및 NGOs, 업계 대표 등 약 200여명 참석
- 우리나라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김근령 사무관 외 4명





II 회의결과

1. CMS 평가항목(Audit Points) 개발

(1) 논의 배경

- TCC '22년~'24년 업무계획은 '22년 CMS 작업반의 평가항목 개발 경과를 고려하여 '23년까지 개발을 완료하도록 명시*

* TCC Priority project specific task f(i) : Develop audit points to clarify the assessment of existing Commission obligations under the CMS

(2) 논의 내용

- (개발 현황) 지난 제18차 연례회의에서 채택한 '22년 이행 평가를 위한 60개 의무사항에 대한 평가항목 개발 완료
 - 나머지 100여 개 의무사항에 대한 평가항목은 가능할 시 12월 예정된 제19차 연례회의 전 이행감시체제 작업반(CMS IWG)에서 개발 결정
- (데이터 확인 이슈) FFA 회원국들은 한도(Limit) 의무사항 확인을 위한 독립적 데이터 (independent data)*가 부재한 항목이 있음을 지적하며,
 - CMS IWG는 이에 따른 의무사항별 이행 평가에 발생하는 격차를 해결하도록 위원회에 권고
 - * FFA의 이러한 주장은 100% 옵서버 승선율이 규정되는 선망선 대비 연승선의 옵서버 승선율은 5%로 현저히 낮으며, 옵서버가 부재한 선박의 보고는 신뢰도 및 정확도가 낮다는 논리에 기반함

(3) 향후 계획

- (평가항목 적용 여부) 개발을 완료한 60개 의무사항의 '22년 CMS 평가 시 적용 여부에 는 회원국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12월 제19차 연례회의에서 추가 논의 결정
 - '23년 CMS 평가 목록은 '22년 목록과 동일 혹은 유사하도록 결정

2. 위험 기반 평가 프레임워크(RBAF') 개발

* Risk Based Assessment Framework : 매년 평가하는 WCFPC 보존조치 의무사항 목록 제작을 위한 의무 불이행 발생 빈도 및 영향에 기반한 위험도 기준

(1) 논의 배경

- '21년 제17차 이행위원회는 '22년 제18차 이행위원회에서 위험기반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에 업무를 집중할 것에 합의

(2) 논의 내용

- RBAF 개발의 목적은 본래 의무사항에 대한 위반 위험도를 측정하여 순위를 나열하여 매년 평가목록 작성 시 고려하려는 의도였으나,
 - 의무별 중요도 및 위반 위험에 대한 회원국의 이견이 상이하고, 의무들에 위험도를 결정하는 대신 의무들에 대한 분류, 평가 기한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는 형상을 보임

(3) 논의 결론

- (RBAF 미채택) 논의가 겉돌자 미국의 제안에 따라 의무들에 대한 위험도 설정 없이 RBAF 작업반 의장이 개발한 의무사항만 매년 평가목록 개발 시 이용 결정



3. 이행감시체제(CMS*) 옵서버 참석 가이드라인 개발

* Compliance Monitoring System

(1) 논의 배경

- 온라인 이행 파일 시스템(CCFS*) 이용에 따라 이행감시보고서(CMR**)에 개별 선박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비공개 의미가 퇴색
 - 이에 이행위원회 의장은 CMR을 공개 문서로 개정 제안하고, CMS 논의를 옵서버가 참석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Online Compliance Case File System : 개별 선박 불이행 사안을 기국이 확인 및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온라인 프로그램

** 이행감시보고서(Compliance Monitoring Report) : 매년 국별 이행 상태를 평가하여 정리한 보고서

(2) 논의 내용

- 미국, EU 등 일부 회원국은 CCFS 개발 이후 국별 이행에 관한 연례보고서 Part 2(AR2)에 개별 선박 및 선사 등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이행보고서가 공개되어도 무방함을 근거로 이행위원회 의장 제안을 지지하였고,
 - 일본 역시 동 제안에 동의하였으나, CCFS가 사용되기 전에 제출된 AR2는 개별 선박 정보 등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에 비공개 유지 필요 주장
- FFA, PNA 등 연안국 회원국들은 CCFS로 인한 상황 변화를 인식하고 AR2의 데이터 비밀 수준이 변화할 수 있음을 인정하나, 그 정도에 대한 회원국 간 이해가 상이함을 주장하였고,
 - 현 WCPFC 이행평가체제에 내포된 불공정함*을 시정하기 전에는 CMR의 외부 공개에 동의할 수 없음을 표명
 - * FFA가 WCPFC 회의 전반에서 주장하는 연승-선망 규제에 대한 불균형으로 추정됨
- 중국은 의장이 제안하는 CMR 공개는 CMR 초안(draft CMR)이기에 공개가 부적절하다 주장하며 반대 의견 피력

(3) 논의 결론

- (합의 무산) FFA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옴서버 CMS 참석 가이드라인에 대한 합의 도출 실패

4. 기타 논의

(1) 협력적 비회원국(CNM)

- (논의 배경) 협력적 비회원국(CNM) 자격 갱신은 매년 이행위원회 검토를 거쳐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
 - 총 8개 국가*가 '23년 협력적 비회원국 자격 갱신 신청
 - * 퀴라소,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라이베리아, 나카라과, 파나마, 태국, 베트남
- (파나마 운반선) '22년 초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수역에서 발생한 파나마 국적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운반선*과 관련한 회원국의 질의 및 해명 요청 진행
 - * QIAN YUAN(파나마 운반선). NPFC 선박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NPFC 협약수역에서 전재 활동 실시
 - 한국은 PSMA 규정에 따라 해당 운반선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실행하였으며, 이후 파나마가 기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한국의 행정 부담을 안겼음을 알리며 기국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
 - EU, 미국 등 회원국도 파나마 국적선들의 NPFC 수역 내 불법조업 이력에 우려를 표하며 국제 규정 준수를 강조
- (논의 결과) CNM 자격 갱신 논의는 신청국들의 추가 정보 제공과 함께 12월 개최 예정인 제19차 연례회의에서 지속 예정



(2) ROP 옵서버 데이터 필드 개정

- (논의 배경) ROP 옵서버의 고래상어 및 고래류와의 상호작용 보고를 개선하기 위한 ROP 최소 데이터 표준 개정 필요 제기
- (논의 결과) 활동이 잠시 중단되었던 지역옵서버 프로그램 작업반(IWG ROP)을 재개하여 ROP 데이터 필드 개선을 위한 권고안 작성 예정
 - 고래류와 고래상어 상호작용을 식별하기 위한 해결책 개발을 동 작업반 업무 우선순위로 결정

(3)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선박 목록

- '22년 새로운 IUU 선박 등재 요청 및 기존 목록 개정 제안 없이 현 WCPFC IUU 선박 목록 유지 결정

〈 현 WCPFC IUU 목록 〉

선명(이전 선명)	기국(이전 기국)	지정일	IUU 활동
Neptune	미상(조지아)	'10.12.10	• WCPFC 어선 기록부에 등록 없이 협약수역 공해에서 조업
Fu Lien No 1	미상(조지아)	'10.12.10	• 무국적 신분으로 협약수역 내 조업
Yu Fong 168	미상(대만)	'09.12.11	• RMI EEZ 내 무허가 조업

2-13 제18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북방위원회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18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북방위원회(NC18)
(회의명 영문) 18th Regular Session of the Northern Committee
- 일시/장소 : 2022.10.04.~10.06(3일)/화상회의
- 의장 : Mr. Masanori Miyahara (일본)

2. 참석규모

- 참가국 : 한국, 일본, 미국, 대만 등 WCPFC 북방위원회 회원국 및 NGOs 등 약 100여명 참석
- 우리나라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김근령 사무관 외 4명

II 회의결과

1. 한국 - 태평양 참다랑어 보존조치(CMM 2021-02) 개정안

(1) 논의 배경

- '22년 7월 한국 정치망에서 폐기된 다량의 태평양 참다랑어(PBF)가 동해안 지역 해변에 떠밀려오는 사태가 발생
 - 한국은 본 사태 해결을 위한 한국 정치망 쿼터 관리를 위한 임시 관리조치*를 제안
- * 한국 정치망 태평양 참다랑어 부수 어획량이 150톤 이상을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한 국내 시판을 '23년~'24년간 일시적으로 허용 제안



(2) 논의 내용

- (JWG 논의 절차) 미국은 태평양 참다랑어 조치의 개정 및 수립은 WCPFC 북방위원회 (NC)와 IATTC 공동작업반(JWG)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상 오류를 지적하며 본 제안서의 채택을 반대
 - 이에 한국은 국내 참다랑어 폐기 사태가 올해 JWG 개최 후인 7월 말에 발생하여 JWG에 본 사태를 알리고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었음을 설명
- (일본 정치망) 일본은 지난 몇 년간 자국 정치망에서도 참다랑어 부수어획이 큰 문제가 되어 한국과 같은 문제를 겪어왔음을 주장하고,
 - 일본 정부는 부수어획일지라도 할당된 쿼터를 초과한 어획분에 대해서는 어민들에게 환급(pay-back)을 요구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한국에게만 특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
 - 한국은 자국 참다랑어 어업이 일본의 그것에 비해 역사가 짧으며, 한국 정치망 어민은 기후변화로 인해 갑작스레 증가하는 PBF 부수 어획분을 생존 방류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없고, 일본 대비 PBF 쿼터가 현저히 적어 일본과 상황이 다를 것을 설명하며 일본의 주장을 반박
- (PBF 자원 회복 상태) 쿡, 피지, 바누아투 등 북방위원회 FFA 회원국은 PBF 자원상태가 회복 계획에 따라 많이 증가*하였지만, 아직 한계기준점(LRP)에 미치지 못하며,
 - 한국의 정치망 폐기율을 PBF 보존조치(CMM 2021-02) 제8항** 위반임을 주장하며 본 제안서 채택을 반대
 - * 현 PBF SSB는 SSBF=0의 10.2%
 - ** CMM 2021-02, para 8 : 지난 3년에 대한 폐기량을 포함한 모든 PBF 어획량 및 노력량을 7월 31일까지 사무국장에 보고
- (한국 수정 제안) 한국 제안서로 인해 PBF 정치망 부수어획이 무제한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한국은 정치망 부수어획 환급 면제량에 대한 300톤 한도를 설정하여 제안하였으나,
 - 본 제안 역시 회원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논의 종료

(3) 논의 결과

- (채택 무산) 회원국의 반대로 한국 제안서는 채택되지 못하고 내년 합동작업반(JWG)에서 논의 지속 결정
 - 한국은 오는 12월 제19차 연례회의에서 자국 PBF 사태에 대한 성명서 제출 예정

2. 일본 - 북방 황새치 보존관리조치 제안서

(1) 논의 배경

- 일본은 제18차 북방위원회에 북방 황새치 국별 어획 노력량을 2008~2010년 기준으로 동결하는 조치를 골자로 하는 보존조치 제안서 제출
 - * 단, 연 북방 황새치 어획량이 200톤 미만인 국가는 조치 적용 제외

(2) 논의 내용

- (적용 수역) 한국, 대만 등 회원국은 일본 제안서 제1항과 제2항*이 본 조치의 적용 범위에 대한 혼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에 해명을 요구**
 - * 제1항 : 본 조치는 북위 20도 이북 공해 및 EEZ에 적용
제2항 : 협약수역 내 북방 황새치 총 어획 노력량은 2008~2010년 평균 이상으로 증가해서는 안 됨
 - ** 북위 20도 이북(제1항)과 협약수역 내 북방 황새치(제2항)은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 추후 조치 이행과 평가 시 기준이 분명치 않을 수 있는 잠재적 문제 존재
- 이에 일본은 북위 20도 이북을 본 조치의 ‘적용 수역’으로 정의하고 협약 수역이라는 문구를 조치에서 삭제하여 타 회원국들의 우려 해소
- (어획 노력량 정의) 한국은 본 조치의 어획 노력량 동결 기준이 과거 북방 황새치에 대한 목표조업량만 일컫는지, 혹은 부수 어획량도 함께 포함되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음을 지적
 - 이에 일본은 자신들의 의도는 부수 어획량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한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수 어획량을 포함해야 함을 조치에 명시

(3) 논의 결과

- (제안서 승인) 북방위원회는 일본이 회원국 의견 및 우려를 반영하여 수정한 제안서를 수정하고 위원회에 본 제안서 채택을 권고



3. NC 의장 - 북방 날개다랑어 어획전략(HS*) 제안서

* 어획전략(Harvest Strategy, HS) : 어업 통제 방식을 사전에 합의하여 합의된 시나리오에 따라 자원을 관리하는 수산자원 관리법

(1) 논의 배경

- 올해 7월 IATTC에서 북방 날개다랑어 어획전략 보존조치를 채택하자, 동 자원에 대한 관리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북방위원회 의장은 WCPFC 보존조치 수립 제안*

* 제안서 주요 내용

[1] 관리 목표(Management Objectives)

- (a) 산란 자원량(SSB)를 향후 10년간 80%의 확률로 한계기준점(LRP) 이상으로 유지
- (b) 향후 10년간 총 자원량의 고갈률을 '06년~'15년 평균으로 유지
- (c) 향후 10년간 어획 강도를 50%의 확률로 목표기준점(TRP) 이하로 유지
- (d) 어획량 및 노력량은 최대한 점진적으로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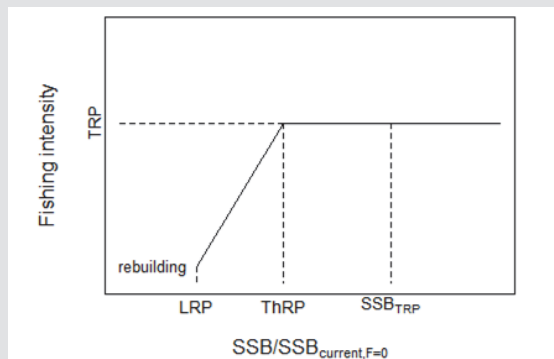
[2] 기준점(Reference points)

- (a) 목표기준점(TRP) : 45%의 SPR*을 도출하는 어획 강도 (F45%)
- (b) 임계기준점(ThRP) : 처녀 산란자원량(SSBF=0)의 30% (30%SSB_{current}, F=0)
- (c) 한계기준점(LRP) : 처녀 산란자원량(SSBF=0)의 14% (14%SSB_{current}, F=0)

[3] 어획 통제 규칙(Harvest control rules)

- 아래 그림1에 따른 어획 통제 규칙* 설정 필요

* ThRP 이하로 자원량이 떨어질 시 어획량을 감축하고, LRP 이하로 자원량이 하락할 시 자원 회복계획 실행



(2) 논의 내용

- 본 제안서는 회원국의 전반적인 지지와 동의를 얻었으며, 어획전략에 기한을 설정해 적용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없음을 주장한 미국의 의견을 수용해 '23년~'29년 기간을 삭제

(3) 논의 결과

- (제안서 승인) 북방위원회는 본 북방 날개다랑어 어획전략 보존조치를 승인하고 위원회에 본 조치의 채택을 권고

2-14 제17차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이행위원회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17차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이행위원회
(회의명 영문) 17th Meeting of the Compliance Committee
- 일시/장소 : 2022.10.04.~10.06(3일)/화상회의
- 의장 : Mr Frank Meere (호주)

2. 참석규모

- 참가국 : 한국, 일본, 호주, 대만, EU 등 CCSBT 회원국 및 NGOs, 업계 등
약 100여명 참석
- 우리나라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김근령 사무관 외 4명



II 회의결과

1. 이행 정책 가이드라인5(CPG5)*

* Compliance Policy Guideline 5 : '20년 제27차 CCSBT 연례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예외 상황에 대한 조치 및 단계. 사무국에 CPG5에 따라 통지 필요

- (CPG5의 과학옵서버 적용 여부) 과학 옵서버 10% 의무 승선율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CPG5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이견 발생
 -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는 전채 옵서버와 과학 옵서버 모두 승선율 의무 이행에 실패하였을 경우 CPG5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 한국, 일본, 대만 등 국가는 과학 옵서버의 경우 승선율 산출이 한 어기가 종료된 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어기 도중 그 의무 달성 여부를 알 수 없는 관계로 CPG5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
- (논의 결과) 항만국 검색 및 과학 옵서버 의무 실패에 대한 CPG5 보고 적용 여부는 회원국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논의 종료

2. 포식된 어획물(depredation)*의 쿼터 차감 여부

- * 어업 활동 중 낚시 바늘에 어획된 SBT가 상어 등 상위 포식종에 잡아 먹히거나, 이미 몸체의 상당 부분이 상위 포식종에 잡아 먹혀 식용이 불가능한 SBT가 어구에 들어오는 경우
- (포식된 어획물 관련 과학위 권고) 작년 제16차 이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과학위원회는 포식된 어획물의 MP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 MP에 따라 산출된 TAC와 SBT 자원평가에 포식된 어획물이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미 산출되지 않은 사망량(UAM*) 산출 시 포식되는 경우를 포함하기에 주요 사항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림

* Unaccounted mortality



- (인도네시아의 쿼터 차감 반대) 인도네시아는 자국 연안 SBT 어업에서 발생하는 포식된 어획물의 양을 산출하기 어려우며,
 - 포식되어 올라온 남방 참다랑어는 어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국별 쿼터에서 차감되지 않아야 함을 주장
- 대부분의 회원국은 포식되어 올라온 어획물도 쿼터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이해를 갖고 있거나, 혹은 이미 차감을 하고 있는 상황
 - 한국 역시 자국 SBT 연승선에서 포식된 채 양승되는 SBT를 차감해야 한다고 이해하나, 인도네시아 설명에 따라 어구 특성상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상기하며 depredation에 대한 정확한 정의 수립의 필요성 강조
 - 뉴질랜드는 정의 수립의 어려움과 이미 Attributable SBT Catch 정의에 모든 SBT 사망량이 포함되어있기에 포식된 어획물도 차감되어야 함을 강하게 주장
- (논의 결과) 회원국 간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여 결론 도출 없이 논의 종료

3. 남아공 불이행

- (남아공 이행위 불참) 남아공은 작년에 이어 올해 이행위원회 회의에 불참
 - CCSBT 회원국은 남아공의 불이행 사안들이 심각하며, 어떠한 시정계획 제출도 없이 이행위원회에 지속 불참하는 상황에 크게 우려
 - 위원회는 사무국에 서한을 통한 남아공에 총회 참석 및 시정계획 제출을 통지하고, 만일 본 시도가 실패할 시 남아공에 대한 제재조치 고려를 결정
- (남아공 총회 참석) 남아공은 이행위원회(CC17)가 종료된 후 연례회의(EC29)에 참석하여 담당자 변경, 부처 건물 이사로 인한 IT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이행의 어려움을 설명
 - 일본은 SBT 주요 수입국으로서 남아공에서 수출되는 SBT의 어획증명서에 오류가 많고, 증명서가 없이 수출되고 있는 경우도 많음을 지적하며 남아공의 이행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국별 담당자를 정하여 이행위 의장, 사무국 등이 참여하는 그룹 개설 제안
- (논의 결과) 일본의 제안에 회원국이 동의하며 그룹 개설을 통한 남아공 지원 결정

2-15 제29차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연례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29차 남방참다랑어(CCSBT) 연례회의
(회의명 영문) 29th Annual Meeting of the CCSBT
- 일시/장소 : 2022.10.10.~10.14(5일)/화상회의
- 의장 : Mr Don MacKay (뉴질랜드)

2. 참석규모

- 참가국 : 한국, 일본, 호주, 대만, EU 등 CCSBT 회원국 및 NGOs, 업계 등 약 100여명 참석
- 우리나라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김근령 사무관 외 6명



II 회의결과

1. 2023년 TAC* 및 국별 할당량

* Total Allowable Catch

- (논의 내용) 관리절차(MP*)에 따라 산출된 '21년~'23년 TAC** 및 국별 할당 비율에 따른 '23년 국별 할당량에 모든 회원국 동의

* Management Procedure

** '20년 제27차 CCSBT 연례회의에서 채택된 연 TAC는 17,647톤

〈 '21년~'23년 쿼터 할당표 〉

번호	국가	국별 쿼터(톤)	쿼터 비율(%)
1	일본	6,197.4	35.5
2	호주	6,238.4	35.5
3	뉴질랜드	1,102.5	6.2
4	한국	1,256.8	7.1
5	대만	1,256.8	7.1
6	인도네시아	1,122.8	5.7
7	EU	11	0.006
8	남아공	455.3	2.4

- (논의 결과) 2023년 TAC 및 국별 할당량 채택



2. 2024-2026년 TAC 및 국별 할당량

- (뉴질랜드 반대) 뉴질랜드는 호주의 축양 어업 감시를 위한 스테레오 비디오 개발과 일본 시장 조사의 더딘 진전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이유로 2024~2026년 TAC 결정을 내년 총회로 연기 제안

* 뉴질랜드는 호주와 일본의 본 프로젝트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전에는 TAC 증가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

- 일본과 호주는 뉴질랜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스테레오 비디오 및 시장 조사 일정을 앞당겨 내년 총회(EC30)에 진전사항에 대한 보고를 약속
- 2024-2026년 TAC 논의는 내년으로 연기

- (인도네시아 국별 할당 체제 개정안) 인도네시아는 TAC의 국별 할당 시 개발도상국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성을 상기하며 TAC 국별 할당 기준의 재수립을 제안

- 일본, 대만, 호주 등 회원국은 인도네시아의 의견에 동의하나, IOTC에서 유사한 논의*가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성과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할당 체제 수립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 표명

* IOTC 할당량기준위원회(IOTC Technical Committee on Allocation Criteria)

- 이에 인도네시아는 할당 기준의 수립이 아닌, CCSBT 회원국 간 할당 비율의 재조정을 희망하는 것이라 해명하였고,
- 본 사안은 내년 인도네시아의 제안서 제출과 함께 재논의 결정

- (논의 결과) 2024-2026년 TAC 및 국별 할당량 채택 실패 및 '23년 재논의 예정

3. 인도네시아 전채 보존조치 개정안

- (논의 배경) 인도네시아는 자국 목재선 17척에 CCSBT 옵서버가 아닌 국내 옵서버 승선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채 보존조치 개정안을 제출
 - 이행위(CC17)에서 옵서버 승선을 논의 중 인도네시아가 예산 및 옵서버 훈련 문제로 인한 승선을 의무 충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안으로 국내 옵서버를 대체 승선시키고 있음을 설명하였고,
 - 이에 대하여 CCSBT에 국내 옵서버 승선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음이 지적되자 인도네시아는 본 개정안을 총회 직전 제출
- (주요 논의 내용) 이행위원회 의장은 본 개정안이 이행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아 사전 논의 및 권고를 누락한 절차상 문제와 중립성이 떨어지는 국가 옵서버의 승선을 허용하면 CCSBT 전채 감시체제를 약화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우려 표명
 - 이에 인도네시아는 본 17척의 목재선의 국가 옵서버 승선은 이미 IOTC에서 승인되어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부족한 옵서버 인력과 본 제안서는 목재선의 안전 문제로 국제 옵서버의 승선이 불가하여 나온 아이디어임을 설명
 - 호주, 일본 등 회원국은 이행위원회 의장의 의견에 동의하며 본 제안서를 내년 이행위원회(CC18)에서 먼저 논의하기를 제안
- (논의 결과) 본 제안서는 내년 이행위원회(CC18)에서 재논의 결정

2-16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ICCAT) 패널1 회기간 회의(2차)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ICCAT) 패널1 회기간 회의(2차)
(회의명 영문) 2nd Intersessional Meeting of ICCAT Panel 1
- 일시/장소 : 2022.10.13(1일)/화상회의
- 의장 : Mr. Paul Bannerman (가나)

2. 참석규모

- 참가국 : 21개 회원국, 3개 비회원국, 8개 NGO 등 약 150명 참석
- 우리나라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심수빈 사무관 외 4명



II 회의결과

1. 눈다랑어 TAC*

* '14-'15년: 8.5만톤 '16-'19년: 6.5만톤, '20년: 6.25만톤, '21년: 6.15만톤, '22년: 6.2만톤

○ (주요의견)

- 중미CPC들은 어업은 본래 불확실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7.5만톤 주장
- EU는 ① 연안개도국 개발 열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7.5만톤이 필요하고, ② PGK* 82%는 전례 없는 접근으로, ③ 지난 자원평가에 적용된 최대연령 25세 가설은 비현실적이므로, 사전예방적인 접근은 이미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

* Probability of Green Kobe : 자원상태가 Kobe 매트릭스 녹색 영역에 분포할 가능성

- 영국, 세네갈, 미국, 한국은 7만톤을 지지
- 일본은 두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도입한 7.5만톤 제안
 - * 차기 자원평가 후 자원상태 전망치가 PGK 60% 또는 70% 이상이 되도록 TAC 조정
- CPC들은 TAC가 타 조치들과 함께 패키지로 처리되어야 함에 공감
- 연례회의에서 모든 수치(6.25만, 7만, 7.5만)를 괄호로 두고 논의 예정

2. 눈다랑어 어획할당 기준

○ (의장안)

- 19-02 4항 구분(4개 그룹)에 따라 그룹별 할당을 부과*하고 전체 TAC 중 5%를 유보하여 어업 개발하고자 하는 대서양 연안개도국에 할당

* a) 그룹: 40-45%, b) 그룹: 16-18%, c) 그룹: 22-25%, d) 그룹: 10-13%



○ (주요의견)

구분	주요의견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2의 그룹 구분은 국가의 개발된 정도를 미반영하므로 부적절함 • 고소득 연안국과 원양조업국이 연안개도국에게 할당 양보 필요 • 16-01 쿼터표 내 CPC는 '15-'20년 평균어획량으로 어획한도 설정 • 당장 조업하지 않는 CPC에게 할당하는 결과를 지양해야 하고, 당장 조업하지 않는 CPC가 장래 조업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미사용 할당은 유보 쿼터로 두고 사용 의도 있는 CPC가 사용 가능해야 함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당 이전은 급진적인 방식이 아닌 점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TAC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본 할당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수용 불가 • 코로나 등 과거 일시적인 어획 감소로 미래 활동이 제약되어서는 안됨 • 미소진 한도의 일부는 이월 가능해야 함 • 전배는 협상 말미에 타결 가능성을 높이므로 현시점 배제는 부적절
중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조업하고 있지 않지만 미래 조업 가능성도 고려 필요 • 어획량 3500톤을 기준으로 대규모 수확국들의 어획량 감축 필요 • 할당 기준연도는 '14-'20년 중 4년을 선택 • 미할당분을 마련하여 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CPC에 할당하고, 미할당분이 부족해지면 기존 CPC 할당 재분배 필요 • 미소진 어획한도는 보존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전배 제한 필요
남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수확국은 명시적인 어획한도 설정이 아닌 trigger 설정 필요 • 이월은 녹색영역에 있을 때에만 허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수확국 기준 : 1999년에 어획량 2100톤 미만인 선망 없는 CPC • 소규모 수확국 배제(어획한도 설정) 기준 : ① 어획량 1575톤 초과 ② 선망 어업 ③ 어획한도 전배 · 이월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당은 최근 평균어획량만이 아닌 역사적 어획, CPC의 보존 및 이행 노력, 연안개도국 개발 열망 등 모든 관련 요소 고려 필요

3. 어류군집장치(FAD) 규제 조치

○ (논의배경)

- 눈다랑어 치어 어획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선망선 FAD에 대한 규제방법(금어기, 개수 제한, 세트 제한 도입 등) 논의

○ (주요의견)

- 온두라스는 중미CPC들을 대표하여, 현행 금어기(72일)를 2개월로 단축할 것을 주장하고, 고정 1개월 + CPC 선택 1개월을 제안
- EU는 ① 현행 FAD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과학위 분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현행 조치 유지를 주장, ② 세트 수 제한 도입을 위한 과학위 작업 지원 필요를 언급 ③ 해양쓰레기 방지 및 책임성 부과를 위해 FAD 등록부 설치를 제안
- 일본은 FAD에 대한 과학위 조언은 분명하므로 FAD 조치 완화는 수용 불가하고, 세트 수 제한 도입 필요를 주장
- 미국도 금어기 단축은 수용 불가하고, 금어기 확대(고정 3개월 + CPC 선택 1개월) 및 점진적인 개수 감축(4년에 걸쳐 300개 > 250개)을 제안
- 사무국은 일부 선망 어업 CPC들의 경우, 노력량(세트 수) 데이터만 제출하고 어획량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보고



4. 기타

○ 연승 오피서버 커버리지

- 일본은 전자모니터링(EM) 표준이 아직 미수립(작업반 논의 중)되었으므로 연승 오피서버 커버리지 조항*은 '24년부터 시행되어야 함을 언급

* 눈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를 목표로 하는 전장 20m 이상인 연승선은 2022년까지 어획 노력의 최소 10%에 대해, 사람 또는 EM을 통한 오피서버 관찰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설작업반은 과학위원회와 협력하여 EM 최소기준에 관해 권고한다.

○ 감시·감독·통제(MCS) 조치

- EU는 개정 의장안에 1차 회의에서 EU가 제안한 전채 조치(입항 전채 20%) 및 지역오피서버 프로그램 부활도 포함되어야 함을 언급
- 미국은 열대다랑어 혼획 선박도 선박 목록에 등록되어야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이를 위한 제안서를 상설작업반에 제출할 것임을 언급

○ 향후 작업

- CPC들은 1차 회의, 2차 회의, 서면 의견 등 지금까지 CPC들이 제기한 모든 의견을 반영한 제안서로 논의할 것을 희망
- EU는 의견 있는 CPC는 반드시 본문에 대한 수정제안문을 제출해야 하고, 의견만 제출하는 것은 논의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임을 언급

2-17 제41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연례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41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연례회의
(회의명 영문) Forty first Meeting of the Commission for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 일시/장소 : 2022.10.24.~11.05(13일)/ 호주 호바트
- 의장 : Dr. Jakob Granit (스웨덴)

2. 참석규모

- 참가국 : CCAMLR 회원국 27여 개국(한국, 미국, 일본, EU, 러시아, 호주 등), NGO, 업계 등 300여명 참석
- 우리나라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 김현태 외 2명*
* 원양협회 및 업계 자문으로 참석



II 회의결과

1. 동남극해(East Antarctica) MPA 제안서 - 한국, EU, 호주, 미국 등*

* 동남극해 MPA 제안서 공동 발의국 : 호주, EU, 인도, 뉴질랜드, 노르웨이, 한국,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르과이(총 10개국)

- (논의 배경) 호주와 EU가 '12년 처음 제안하여 지난 10년간 논의되고 있으며, 제41차 연례회의에 논의 지속을 위해 재제출*

* EAMPA 제안서 주요 내용

MacRobertson, Drygalski, d'Urville Sea-Mertz 세 개의 과학연구수역을 지정하여 관리

- (논의 내용)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회원국이 본 제안서가 최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인 제안서이며, EAMPA 수립을 위한 논의가 10년간 지속된 만큼 채택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었음을 상기하며 본 MPA 수립을 촉구
 - 러시아는 본 제안서에 제시된 연구수역들의 경계 설정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 성과 지표(performance indicators)가 부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제안된 세 개 수역에 대하여 별개의 보존조치를 각각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
 - 중국 역시 본 수역이 데이터가 부족한 지역(data-poor region)이라는 반복해서 주장하고, MPA 수립이 기후변화 예방에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본 제안서의 채택 반대
- (논의 결과) 중국, 러시아 등 회원국 반대로 채택 부결

2. 웨델해(Weddell Sea) MPA 제안서 - 한국, EU, 노르웨이, 미국 등*

* 웨델해 MPA 제안서 공동 발의국 : EU, 노르웨이, 우루과이, 호주, 영국, 뉴질랜드, 미국, 한국, 인도, 우크라이나(총 10개국)

○ (논의 배경) '16년 호주와 EU가 처음 제안*하여 매년 논의 지속 중

* WSMPA 제안서 주요 내용

phase 1과 phase 2를 통한 단계적 MPA 설정 제안

- 일반보호구역(GPZ), 특별보호구역(SPZ), 어업연구구역(FRZ)으로 구성

○ (논의 내용) EAMPA 제안서와 마찬가지로 본 제안서는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얻었으나,

- 러시아는 웨델해 MPA는 CCAMLR 협약에 따른 목적 중 합리적 이용(rational use)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주장하며 제안서에 반대하였고,

- 중국 역시 본 수역이 데이터가 부족한 수역이며, 웨델해가 기후변화 영향을 적게 받은 만큼 MPA 지정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웨델해 MPA 수립을 반대

○ (논의 결과) 중국, 러시아 등 회원국 반대로 채택 부결



3. Domain 1 MPA 제안서 - 칠레, 아르헨티나

- (논의 배경)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18년 제출하였으며, 지난 5년간 회원국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제41차 연례회의에 제안서* 제출

* Domain 1 MPA 제안서 주요 내용

- [1] 일반보호구역(GPZ)과 크릴조업구역(KFZ) 두 구역으로 구분
- [2] SISO 옵서버 승선 의무
- [3] CCAMLR 취약해양생태계(VME) 등록 구역 내 조업 금지 등

- (논의 내용) 다수의 회원국은 본 제안서가 MPA 네트워크 수립을 위한 CCAMLR의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 인정하며 본 제안서에 따른 D1 MPA 수립을 지지*

- 동 국가들은 Domain 1 구역이 과학위원회(SC)에서 데이터가 충분하고, 물개(fur seal)가 서식하는 지역으로 확인한 점을 상기하며 본 MPA 수립의 정당성을 주장

* 한국은 본 D1MPA 제안서에 대한 공식 입장을 수립하지 못하여 논의 중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음

- 러시아는 본 제안서에 대한 연구감시계획(RMP*)의 부재를 지적하고, MPA 평가 지표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제안된 MPA 수립 기간 및 범위에 대한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며 본 제안서 채택을 반대하였고,

- 중국 역시 본 MPA 제안이 기반하는 과학적 근거가 최신 자료(best available science)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러시아 의견에 동의

* RMP : Research and Monitoring Plan

- (논의 결과) 중국, 러시아 등 회원국 반대로 채택 부결

4. 영국 48.3해구 이빨고기 조업선 4척

○ (논의 배경) '21년 제40차 CCAMLR 연례회의에서 48.3 해구* 이빨고기 총허용어획량 (TAC)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 발생으로 관련 보존조치(CM 41-02)의 개정 실패

* 48.3 해구는 영국령 사우스조지아 제도가 위치하며, 본 제도는 영국-아르헨티나의 영토분쟁 지역

** 러시아는 본 해구에 이빨고기 치어가 많이 서식하여 어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빨고기 자원 보호를 명분으로 동 해구의 TAC 설정 반대

- '22년 초 영국은 자국 선박 4척에 사우스조지아 제도 수역 내 이빨고기 조업을 허가하여 48.3 해구에서 조업을 실행하였고,

- 이후 아르헨티나가 동 4척의 어선을 체약국 IUU 목록(CP-IUU list)에 등재 신청

○ (논의 내용) 아르헨티나는 위원회가 CM 31-01*에 따라 사우스조지아수역은 어획 한도를 수립할 의무가 있으며, CM 41-02의 개정 실패로 21/22년 어구의 48.3 해구 어획 한도가 수립되지 않았으니 영국의 '22년 동 수역 내 이빨고기 조업은 불법 어업이라 주장하였고,

- 동 어선들은 위원회 체제 밖에서 조업하였으니 타 회원국에게 동 어선들의 어획물에 대한 CCAMLR CDS 발급을 금지하도록 호소

- 러시아 역시 위원회 보존조치가 없는 모든 수역은 폐쇄된 어장이라 지적하며 4척의 영국 어선은 불법 어선이라는 아르헨티나 주장에 동의

* CM 31-01 : 사우스조지아(48.3 해구) 조업 규제(Regulation of fishing around South Georgia)

○ 영국은 CM 31-01에 명시된 어획 한도의 부재가 조업 금지를 명시하는 조항이 없음을 지적하며 아르헨티나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 동 4척의 영국 어선은 CCAMLR의 이빨고기 조업을 위한 보고 등에 대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며, 자국 수역 내 조업이므로 불법 어업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

○ (논의 결과) 영국의 반대와 대다수의 타 회원국의 침묵으로 위원회는 본 사안에 총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 이에 영국 어선 4척의 CP-IUU 목록 등재 시도는 무산



5. 88.1/88.2 해구 이빨고기 입어신청

- (영국 조업선 4척) 21/22년 어기 중 48.3 해구 이빨고기 조업으로 불법 어업 논란이 불거진 영국 어선 4척이 22/23년 어기 88.1 및 88.2 해구에 입어를 신청하자 러시아는 승인에 반대
 - 영국은 IUU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선박의 입어 신청을 막을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러시아의 주장에 반박하였으나,
 - 러시아는 과거 IUU 목록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위원회가 우려를 표한 자국 선박에 대해 러시아가 입어신청을 철회한 이력을 상기하며 영국 어선의 입어신청 승인 반대 입장 견지
 - 영국은 과학적 근거에 반하여 48.3 해구 TAC 채택을 방해하는 러시아의 행보를 규탄하였으나, 러시아가 영국 선박의 입어신청에 대한 거부권(veto)을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발언과 함께 동 선박들의 88.1 및 88.2 해구 입어신청을 철회
- (논의 결과) 영국 어선 4척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입어신청* 승인
 - * 22/23년 어기 88.1/88.2 해구 입어신청
 - 88.1 해구 : 9개국에서 총 24척 신청(호주, 칠레, 일본, 한국, 뉴질랜드, 스페인, 우크라이나, 영국, 우루과이)
 - 88.2 해구 : 8개국에서 총 23척 신청(호주, 일본, 한국, 뉴질랜드, 스페인, 우크라이나, 영국, 우루과이)

2-18 제23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특별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23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특별회의
(회의명 영문) 23rd Special Meeting of ICCAT
- 일시/장소 : 2022.11.13.~11.21(9일)/ 파로(포르투갈)
- 의장 : Mr. Ernesto Penas Lado (EU)

2. 참석규모

- 참가국 : 47개 회원국, 5개 비회원국, 5개 정부간기구, 26개 정부간기구,
2개 등 약 650명 참석
- 우리나라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심수빈 사무관 외 8명*

II 회의결과

1. 열대다랑어 보존관리조치

- (배경)
 - 주요 이슈* 논의를 위해 금년 2차례 회기간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CPC들은 기존 입장을 고수할 뿐 합의점 도출에 실패함
 - * 눈다랑어 TAC 증가 및 할당 방식, 선망선 FAD 통제, 감시·감독·통제 조치 등
 - 본 특별회의에 의장(가나)은 회기간 회의에서 제기된 CPC들의 의견을 종합한 의장안을 제출하였고, EU, 일본, 남아공도 제안서를 제출함



[제안서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EU	① CPC 구분 : 16-01 쿼터표 내 CPC와 그 외 CPC ② 1단계 조정 - 16-01 쿼터표 내 CPC의 경우, [(16-01 어획한도)-(2015-2020년 평균어획량)]을 유보량(common pot)으로 반납 - 그 외 CPC들은 16-01 4항에 명시된 기준점(연안개도CPC는 3,500톤, 그 외 CPC는 1,500톤) 초과 시, 동 기준점을 적용하고 초과하지 않으면 2015-2020년 평균어획량 적용 후, 2020년 어획량 대비 감축량을 유보량으로 반납 ③ 원양조업CPC - 원양조업CPC들은 1% 추가 감축하고 감축량을 유보량으로 반납 ④ 큰 수확국의 할당을 작은 수확국에게로 이전 - 할당 5% 이상 가진 CPC 할당을 소규모 수확국에게 이전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적인 감축을 적용 및 유보량으로 반납 ⑤ 최종 조정 - 2020년 어획량 대비 30% 이상 감축된 연안CPC의 한도 조정 - 유보량은 역사적 어획이 있는 모든 CPC에게 0.7%까지 할당 - 유보량 중 형평 쿼터 및 영세 쿼터를 각 5%씩 제외하고, 특히 중간 소득 및 저소득 CPC들에게 우선적으로 재할당												
일본	① CPC 유형에 따라 눈다랑어 어획한도 증감(기간: 23-25년) - 연안개도CPC 2%↑, 연안CPC 2%↓, 원양조업CPC 4%↓ ② 미소진 어획한도 재분배 방식 - 기본 어획한도 5%까지 이월 허용 (※ 현행: 10%) - 어획한도 10% 이상 미소진하면, 2년 후 기본 어획한도 5% 반납 - 어획한도 90% 이상 소진하면, 2년 후 전체 미소진량(어획한도 미소진 CPC 반납분) 중 일부(기본한도 10%까지) 사용 요청이 가능하고, 전체 미소진량은 비례적으로 배분 - 2년 연속 어획한도 10% 이상 미소진하면, 익년부터 이월량을 제외한 미소진량 만큼 기본 어획한도 감축 ③ 상기 규칙은 소규모 수확국(21-01 4항d) CPC)에게는 미적용												
남아공	현재 명시적인 한도 없는 소규모 수확국을 3그룹으로 분류하고, 어획량이 그룹 할당량 또는 개별 CPC 장려 한도(1000톤)를 초과할 경우 그룹 할당량 조정 또는 해당 CPC에 대한 명시적인 한도 설정 <table border="1" data-bbox="266 1566 1199 1721"> <thead> <tr> <th>하위 그룹</th> <th>개별 CPC 장려 한도(톤)</th> <th>그룹 할당량(톤)</th> </tr> </thead> <tbody> <tr> <td>개발도상 연안 CPC</td> <td>1,000</td> <td>TAC의 8%</td> </tr> <tr> <td>개발된 연안 CPC</td> <td>1,000</td> <td>TAC의 3%</td> </tr> <tr> <td>ICCAT 비연안 CPC</td> <td>1,000</td> <td>TAC의 2%</td> </tr> </tbody> </table>	하위 그룹	개별 CPC 장려 한도(톤)	그룹 할당량(톤)	개발도상 연안 CPC	1,000	TAC의 8%	개발된 연안 CPC	1,000	TAC의 3%	ICCAT 비연안 CPC	1,000	TAC의 2%
하위 그룹	개별 CPC 장려 한도(톤)	그룹 할당량(톤)											
개발도상 연안 CPC	1,000	TAC의 8%											
개발된 연안 CPC	1,000	TAC의 3%											
ICCAT 비연안 CPC	1,000	TAC의 2%											

○ (주요의견)

CPC	주요내용
온두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C 7.3만톤 지지하고, 현행 조치 TAC(6.2만톤)와 어획한도 합산량 간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TAC 증가는 반드시 필요 • 큰 수확국들의 할당을 개도국에 이전 • FAD 금어기 단축 (고정 1개월 + 선택 1개월)
세네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C 7.3만톤 지지하고, 서아프리카 제안서 토대로 할당 논의 필요 • 이월은 16-01 CPC만이 아닌 a)-c)그룹 모든 CPC가 가능해야 함 • FAD 금어기 현행 유지
남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C 7.3만톤 지지하고, 소규모 수확국에 대한 명시적인 한도 설정에 반대 • FAD 금어기 현행 유지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C 7.3만톤 수용 가능 (회기간 회의 입장: 7.5만톤) • EU 할당안이 서아프리카, 일본안보다 연안개도국에게 유리 • 현행 FAD 조치에 대한 과학위 평가 전까지 현행 금어기 유지 필요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적인 FAD 통제 없이는 TAC 증가 반대 • 소규모 수확국 한도는 소규모 수확국이 제안해야 함 • FAD 금어기 확대 (고정 3개월 + 선택 1개월) • 선별적 어획하는 대형 선단에 대한 별도 취급 필요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C 7만톤 지지하고 추가적인 FAD 통제 필요 • FAD 세트 수 제한이 마련되면 개수, 금어기 제한은 불필요할 것 • 미소진 어획한도의 소급적 처벌(EU안)은 수용 불가. 미래에 어획한도 미소진 시 어획한도 감축은 수용 가능 • CPUE 데이터를 제공하는 연승CPC들의 할당이 감축되면 데이터 감소로 자원 평가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C 7.3만톤 수용 가능 • 미소진 어획한도의 소급적 처벌은 수용 불가 • 16-01 CPC들의 어획한도 논의 시작점은 16-01이 되어야 함 • 연승이 감축한 어획한도를 치어 어획하는 전망에 할당하는 것에 반대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어획량만을 기준으로 어획한도 설정하는 것에 반대 • TAC 증가 상황에서 어획한도 감축은 수용 불가



○ (결과)

- 여러 CPC는 제안서가 늦게 제출되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였고, 할당은 충분한 논의 시간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 TAC, 할당, FAD, MCS 조치가 패키지로 논의되어야 함을 언급함
- CPC들은 작년 정기회의와 금년 회기간 회의에서 표명한 입장을 반복했을 뿐, 주요 이슈들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여, 현행 조치(21-01)를 1년 연장하고 내년에 보다 긴 회기간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 (1차) 3.27~31, (2차) 6.19~23
 - '23년 눈다랑어 TAC 62,000톤, FAD 금어기 72일(1.1~3.13)

2. 참다랑어 관리절차(MP) 채택

○ (배경)

- 대서양 참다랑어의 새로운 자원관리 방식*을 수립하기 위한 관리전략평가 (Management Strategy Evaluation) 과정이 '14년부터 진행되어옴
 - * 혼합(mixing) : 동부 계군이 서부 해역에서 어획되고 서부 계군이 동부 해역에서 어획되는 현상. 서부 해역에서 어획되는 동부 계군 비중은 최대 70%에까지 이르는 반면, 동부 해역에서 어획되는 서부 계군 비중은 1% 미만임.

[전통적인 자원평가와 새로운 관리절차 비교]

구 분	전통적인 자원평가 (Best Assessment)	새로운 관리절차 (Management Procedure)
운영 모델 (OM)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함 (BMSY, FMSY) • 최선의 결과 중심 (정치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 (다양한 성과지표 활용) • 복수의 결과 도출 (보다 과학적)
TAC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협상에 의한 도출 • (협상 비용 수반, 보존에 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된 규칙에 따른 자동적 도출 • (협상 비용 절감, 보존에 유리)
동·서부 계군 혼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고려 • 각 계군에 대한 별도의 자원평가 및 관리조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 • 양 계군에 대한 단일한 자원평가 및 관리조치 실시

- 금년 4차례 MSE 회의를 통해 관리절차 주요요소에 대한 관리자들의 선호를 확인하고 예비관리절차들의 압축 및 수정 작업을 한 후, 본 특별회의에 최종 결정사항들*을 상정함

* 1) 최종 MP 후보: BR과 FO

2) MP 옵션 사항: ① MP 관리주기 - 2년 또는 3년, ② 자원상태가 양호한 상태일 가능성(PGK: Probability of Green Kobe) - 60% 또는 70%

○ (경과)

- BR과 FO 중,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CPC들은 BR을 선호하였음
- 관리주기의 경우, 미국·캐나다를 제외한 CPC들은 3년을 선호하였음
- PGK의 경우, 서부CPC들(미국, 캐나다, 일본)은 60%를 선호한 반면, 동부CPC들은 65% 또는 70%를 선호하였음

- EU는 초기에 PGK 70%를 지지한 CPC들이 합의를 위해 65%로 내려왔으므로 서부CPC들도 유연성을 보일 것을 요청하였으나,

- 서부CPC들은 관리절차 수립으로 인한 혜택을 서부CPC들은 동부CPC들과 동일하게 향유하지 못함*을 언급하며, BR 선정, 관리주기 3년은 수용할 수 있지만 PGK 60%는 포기할 수 없음을 표명

* 서부는 동부에 비해 자원량이 적고 자원상태가 불량함. 새로운 MP 적용 시 동부 TAC는 중장기적으로 30% 이상 증가할 수 있는 반면, 서부는 PGK 60%에서만 현재 수준의 TAC를 유지할 수 있고, PGK 60% 초과 옵션 선택 시에는 TAC 감축이 요구됨

- 동·서부 CPC간 PGK에 대한 입장 차이 해소를 위해, 일본은 최초 주기(phase-in 단계)에는 PGK 60%, 65%에 관계없이 동·서부 TAC가 동일(동부 40,570톤, 서부 2,726톤)하므로, 서부 60%·동부 65% 또는 동·서부 모두 62.5%로 하는 작업을 최초 주기 동안 진행할 것을 제안함

- 미국은 현장에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과학위 의장에게 질문하였고, 과학위 의장은 작업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하였으나,

- EU는 그러한 작업은 공식 과학위 회의에서 결과가 정식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며 하며 제안에 반대함



○ (결과)

- 의장은 MP 채택 여부에 관계 없이, 서부는 어차피 TAC 변동이 없으므로, MP 미채택의 불이익은 동부에게 돌아감을 강조하며 합의를 종용하였고, 동부 CPC들이 PGK 60%를 수용하여 MP 채택됨

[대서양 참다랑어 관리절차]

모델	• BR (Butterworth · Rademeyer 개발, 동·서부 10개 지표 사용)
자원상태	• 동·서부 계군 모두 Kobe 녹색 영역 위치 가능성이 60% 이상
안전성	• 동·서부 계군 모두 자원상태가 BLIM 미만일 가능성이 15% 미만
관리주기	• 동·서부 계군 모두 3년
안정성	• 동·서부 계군 모두 관리주기 간 TAC 최대변동폭은 +20%/-35%
최소 TAC 변동	• TAC 변동폭이 서부 50톤, 동부 1,000톤 미만일 경우 TAC 유지

3. 동부 대서양 참다랑어 쿼터 할당

○ (배경)

- 관리절차 채택 후 동부 TAC 증가분(4,570톤)의 할당 방법 논의

○ (경과)

- 패널2 CPC들은 특별회의 전 및 회의 중 자국의 할당 증가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제출하였음
- 할당 논의가 시작되자, 거의 모든 CPC들은 나름의 근거를 토대로 자국의 할당 증가 당위성을 피력하였음*

* 다른 연안개도국 대비 적은 할당, 연안국임에도 적은 할당, 자국 해역에 회유량 증가, 과학조사 기여, 권고에 명시된 역사적인 할당비율 회복 문구 등

- EU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건 같다고 언급하며 ① 회복기간 동안 가장 많은 희생을 한 것은 EU이고, ② EU 어업인 중에는 쿼터 감축으로 어업을 중단한 경우도 있으며, ③ 역사적인 할당비율을 찾고자 하면 EU는 59%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④ 알제리의 경우, 14-04에서 5%까지 증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할당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마땅하고 다른 CPC들은 모두 비례적 증가를 할 것을 제안함

- 의장은 마지막 패널2 세션에서 의장 할당안을 제시하며 할당안 산출 근거*를 설명하였음

* 연안국과 원양조업국 구분, 연안개도국과 연안국 구분, 1천톤 미만 작은 수확국 고려

- 일부 CPC들은 의장안에 불만족을 표하며 의장안을 수용하기 어렵고 시간이 없으면 내년에 다시 할당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하였음

- 의장은 할당안을 1년만 적용하고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EU는 내년으로 논의가 넘어가면 EU는 과거 비율 59%를 요구할 것이라며 CPC들의 합의를 종용하자,

- 불만족한 CPC들도 마지못해 의장안을 수용함

○ (결과)

CPC	현재(21-08) 연간 킬터(t)	'23-25년 연간 킬터(t)	증가량(t)	증가율(%)	비고
EU	19,460	21,503	2,043	10.5	연안국
모로코	3,284	3,700	416	12.7	연안개도국
일본	2,819	3,114	295	10.5	원양조업국
튀니지	2,655	3,000	345	13.0	연안개도국
튀르키예	2,305	2,600	295	12.8	연안개도국
리비아	2,255	2,548	293	13.0	연안개도국
알제리	1,655	2,023	368	22.2	연안개도국
이집트	330	513	183	55.5	연안개도국
노르웨이	300	368	68	22.7	연안국
한국	200	221	21	10.5	원양조업국
아이슬란드	180	224	44	24.4	연안국
알바니아	170	264	94	55.3	연안개도국
중국	102	112	10	9.8	원양조업국
대만	90	101	11	12.2	원양조업국
시리아	80	129	49	61.3	연안개도국
영국	-	63	63	-	연안국
나미비아	-	50	50	-	연안개도국
미할당	115	38	-77	-	-
합계	36,000	40,570	4,570	12.7	-



4. 남방 날개다랑어 보존관리조치

○ (배경)

- 현행 조치(16-07)가 '22년까지 연장된 후, 과학위 조언('20)*을 토대로 남아공이 TAC 증가 및 TAC 증가분을 할당하는 제안서**를 제출함

* 초과어획 상태가 아니고 과도어획 중이 아님. TAC 2.8만톤은 '33년에 PGK 83%

** (TAC) 2.4만톤 → 2.8만톤 (할당) 모든 CPC 할당 20% 증가(대만은 10% 증가)

○ (경과)

- 남아공은 가장 큰 할당을 갖고 있는 대만은 할당 증가율이 10%이지만 할당 증가량은 가장 많음을 언급함

- EU는 일률적인 비례적 증가가 아니면 할당비율 변경을 일으키므로 할당 방식에 관해 더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함

* 주: EU는 EU가 가장 많은 할당을 갖고 있는 동부 참다랑어 할당 논의 시 동일한 할당 방식이 적용될 것을 우려하여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추정

- 대만은 남아공이 제안한 할당안을 수용할 수 있으나 미래에 선례로 작용해서는 안됨을 보고서에 기록 요청함

- 일본은 패널3 회원국이 아닌 4개 CPC가 할당을 받고 있는 것은 ICCAT 관행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4개 CPC는 패널3에 가입하거나 할당을 포기할 것을 요청함

* 코트디부아르, 앙골라, 세인트빈센트 앤 그레나딘, 퀴라소

○ (결과) 4개 CPC는 패널3 가입 의사를 표명하였고 제안서 채택됨

CPC	'23-'26년 연간 어획한도(t)
대만	10,340
남아공	5,280
나미비아	4,320
브라질	2,600
EU	1,765
일본	1,630
우루과이	530
벨리즈	300
중국	240
한국	170
영국	120
코트디부아르	120
앙골라	60
퀴라소	60
필리핀	30
TAC	28,000

- * 1) 테이블에 열거되지 않은 CPC는 어획량을 30톤으로 제한
- 2) 미소진 어획한도 이월: 기본 어획한도 25%까지 허용
- 3) 전체 TAC 미소진분에서 CPC 미소진 이월분을 제외한 잔량이 있을 경우, CPC 기본 어획한도 25%까지 사용 요청 가능

5. 남방 청상아리 보존관리조치

○ (배경) 남방 자원상태도 북방과 동일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한 EU가 작년에 채택된 북방 조치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함

- * 자원 회복조치 1단계로서, 23-24년에 남방 청상아리의 선상 보유 금지. 24년에 과학위에서 어업폐사량을 고려하여 이후 연도들에 대한 보유 가능성 조연 제공



○ (경과)

- 남아공과 나미비아는 남방 자원상태가 보유금지를 할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 것은 아니므로 사회경제적 고려하에 제안서에 반대함
- EU와 영국은 '23-'24년에 일부 보유가 가능*하도록 제안서를 수정함
 - * '12-'21년 기간 어획량이 500톤 이상인 CPC들은 동 기간 어획량의 40%까지, 500톤 미만인 CPC들은 동 기간 어획량의 60%까지 보유 허용
- 이후 남아공은 옵서버 승선(EM 포함) 하에서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움을 언급함
- EU는 북방 조치 논의 시 적극 참여한 남아공이 협상의 늦은 단계에서 새로운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양승 시점에서 생존한 청상아리를 죽여서 보유할 가능성이 없어야 함을 강조함

○ (결과) 옵서버 요구사항은 '24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제안서 채택됨

CPC	'12-'21년 평균어획량(톤)	'23-'24년 허용보유량(톤)
EU	1,258	503
나미비아	640	256
브라질	347	208
남아공	256	154
...
일본	103	62
한국	6	4

- (기타) 일본은 '모든 양륙은 CITES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각주 추가에 반대 (중국도 동의)하여 동 각주 삭제됨

6. 바다거북 보존관리조치

- (배경) 작년에 미채택된 제안서*로서, 미국 외 EU도 제안서를 제출함
 - * 일본은 환형낙시 사용이 청상아리 어획율을 높일 수 있음을 이유로 반대
- 제안서 공통내용 : 수심 100m 내 연승어업은 ① 환형낙시, ② 지느러미 물고기 미끼, ③ 기타 위원회 승인 조치 중 1가지 이상을 이행*
 - * 바다거북 분포 범위 밖인 북위 55도 이북 및 남위 35도 이남 조업선박은 적용 면제
- EU 제안서 : 지중해는 바다거북 서식이 적고, 지중해수산위원회(GFCM)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므로 조치의 지중해에 대한 적용 면제
- (경과) 미국과 EU는 거북이 대서양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조치 적용 면제를 남위 45도 이남으로 축소시킬 것을 제안했으나, 일본은 위원회 조치는 개별 연구가 아닌 공식적인 과학위 조연을 근거로 해야 함을 이유로 반대함
- (결과) 원안대로 북위 55도 이북 및 남위 35도 이남으로 합의하고, '23년에 과학위에서 범위의 남방경계에 대한 조연을 제공하기로 함

7. 국제공동검색제도 조치

- (배경)
 - 작년 연례회의 및 금년 IMM 회의에서 캐나다는 서부 대서양에만 적용되는 공해 승선검색제도*를 제안하였으나, 중국이 반대함**
 - * 1) 검색 우선순위 선박: 옵서버 미승선 대형 참치 조업선, 국제법·국내법 위반 전력이 있는 선박
 - 2) 무력 사용: 검색관 안전에 대한 위협 또는 임무 수행을 방해받는 경우에 가능, 비례원칙 준수 필요(공해어업협정 문구와 동일)
 - ** ICCAT 협약과 국제공동검색제도에 관한 권고(75-02)는 (참여 희망) 체약당사자 간 적용되는 제도를 의미하므로, 의무적인 승선검색제도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음



- EU, 미국, 일본은 작년 연례회의 및 금년 IMM 회의에서 본 제안서를 지지하고 서부 대서양만이 아닌 협약수역 전체에 적용되는 제안서로 수정되길 요청하였음
- 캐나다는 국가관할권 이원해역(즉, 공해)에 적용되는 제도로 범위를 확장하여 제안서를 다시 제출함

○ (주요의견)

CPC	주요내용
일본	① 본 제도는 불법 해상 전재 근절에 기여할 것 ② 검색보고서 웹사이트 비공개 영역 등록은 다른 RFMO에서 논의 중인 사항 이므로 삭제 요청
중국	비체약당사자 참여 조항 삭제 요청 (제도는 체약당사자 간에만 적용)
모로코	황새치와 참다랑어 어업에 적용되는 제도가 시행 중이므로 황새치와 참다랑어 어업에는 적용 면제 요청
우루과이 밸리즈	① 일부 CPC들은 검색 수행 역량이 없어, 불평등한 제도가 될 것 우려 ② 제안서에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미래에 협력하고자 함
캐나다	① 타 어업에서 시행 중인 제도와 통합하기 위한 전환 기간을 제안 ② 검색선 파견 역량이 없는 CPC도 검색관 교환으로 참여 가능
EU	① 자발적인 검색관 교환은 참다랑어 어업에서도 유용성이 확인되었음 ② 개도국들은 우려할 것이 아닌, 자국 주변 해역에 대한 통제 강화 및 역량 구축 기회로 생각해 줄 것을 요청

○ (결과)

- 우루과이 등 개도국들의 반대로 상설작업반 세션에서 미합의되었으나,
- 총회 의장(EU)은 폐회일 총회 세션에서 본 제안서 논의를 재개하여, 우루과이는 상설 작업반에서 논의가 종결되었어야 함을 언급함
- 캐나다, 미국 등은 이행 시점을 유예하는 것으로 타결을 시도했으나,
- 우루과이는 더 많은 시간이 아닌, 역량 전수 및 참여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규정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제안서에 끝까지 반대하여 미채택됨

2-19 제19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연례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19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연례회의
(회의명 영문) 19th Regular Session of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Commission
- 일시/장소 : 2022.11.27.~12.03(7일)/ 다낭(베트남)
- 의장 : 김정례(대한민국)

2. 참석규모

- 참가국 : WCPFC 회원국 33여 개국(한국, 미국, 일본, EU, 호주 등), NGO, 업계 등 300여명 참석
- 우리나라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 김현태 외 26명





II 회의결과

1. 미국, 캐나다 - 상어 조치(CMM 2019-04) 개정안

- (논의 배경) 미국과 캐나다는 상어 (1)지느러미 부착(8, 9항)과 (2)와이어 트레이스/샤크라인 이용 금지(16항), (3)상어 방류 지침(20항)을 골자로 하는 상어 조치 개정안 제출
- (논의 내용) 일본은 상어를 목표 조업하는 연승선의 경우 와이어 트레이스 및 샤크라인 이용 금지가 불가함을 주장하여 '다량어/새치류를 목표 조업하는 연승선'으로 범위를 조정하였으나,
 - EU는 조치의 적용 수역(20S~20N)에서 새치류를 목표 조업하는 연승선이 없음을 지적하며 새치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주장하였고,
 - 미국은 새치류의 부수어획량이 상당함을 상기시키고, '목표 조업(target for)'라는 문구에 대한 논란이 이미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새치류도 포함하기를 주장
 - 회의 종료 전 EU의 양보로 새치류 포함에 합의
- 지느러미 부착 의무(8, 9항)은 내년 열대성 다량어 조치 논의에 집중하기 위해 '24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 상어 방류 지침(20항)은 부수 어획된 상어의 방류를 위해 아릿줄(branchline)을 가능한 물속에서 낚싯바늘에 최대한 가까이 잘라내는 방식으로 합의하여 개정
- (논의 결과) 상어 조치 개정안 채택

2. 미국 - 전재 조치(CMM 2009-06) 개선안

- (논의 배경) 미국은 WCPFC 전재 조치를 FAO 전재 가이드라인에 준하거나 혹은 더 엄격한 규정을 갖도록 개정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
- (논의 결과) 전재 조치 개선을 위한 미 제안 승인

3. FFA - 어획량·노력량 일일 보고 조치(CMM 2013-05) 개정안

- (논의 배경) FFA 회원국은 (1)전자 로그북 의무와 (2)WCPFC 전자보고 표준·사양·절차 (SSP)에 따른 선박 및 기국의 어획/노력량 보고 의무* 신설을 제안

* 선박의 협약수역 내 항차 종료 및 전재 완료 후, 선박은 기국에게 15일, 기국은 위원회에 30일 내로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

- (논의 내용)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등 국가는 FFA가 제안한 어획/노력량 보고 주기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국의 데이터 확인을 위한 업무량 증가가 상당할 것임을 설명하며 우려 표명
 - FFA 회원국은 본 보고 방식이 SIDS 및 연안국에 부과된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유감 표명
 - 합의점 도출을 위해 미국이 7월 1일과 12월 31일 가용한 데이터를 제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합의 도출 실패
- (논의 결과) 개정안 채택



4. FFA - 가다랑어 관리절차(MP) 제안서

- (논의 배경) WCPFC 어획전략 수립계획은 '22년 가다랑어 관리절차(MP) 채택을 명시
- 가다랑어 관리절차 주요 내용

1. 목표(Objectives)

- (1) 가다랑어 산란자원량 평균 고갈률이 TRP 수준으로 유지
- (2) 가다랑어 산란자원량이 LRP 이하로 떨어질 위험이 20% 미만으로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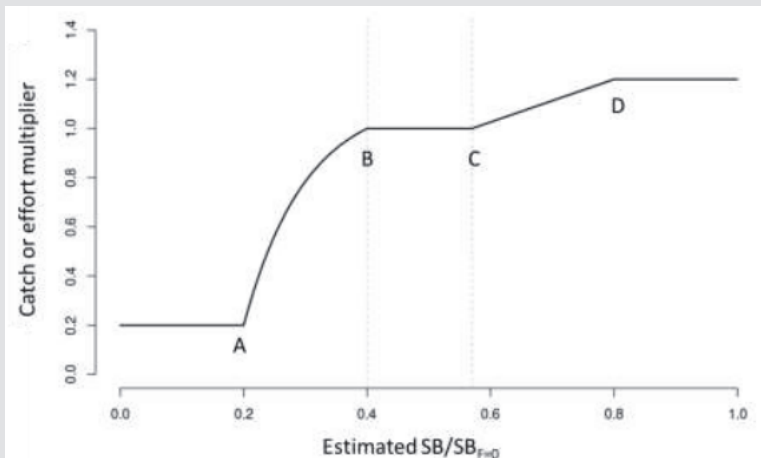
2. 기준점(Reference points)

- (1) 목표기준점(Target reference point) : ① '18-'21 평균 고갈률과
② 장기 equilibrium 고갈률 중간값의 평균치(50 : 50 비중)
- (2) 한계기준점(Limit reference point) : 최근 처녀 산란자원량 평균 추정치의 20%

3. MP 범위

- EEZ 및 공해
- 선망선, 채낚기 : 노력량
- 기타 상업 어업(가, 눈, 황다랑어 2,000톤 이상 어획) : 어획량

4. 어획통제규칙(HCR)



- (논의 결과) 본 관리절차는 FFA 제안에 따라 임시 관리절차로써 보존관리조치(CMM) 형태로 채택
 - '23년 2월 16일부터 실행되어 3년 주기로 2번 시범운영 예정

5. FFA - 남서 태평양 황새치 보존조치 제안서

- (논의 배경) FFA 회원국은 현행 황새치 보존조치(CMM 2009-03)의 제한 규정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며 태평양 도서국의 의존도가 높은 남서 태평양 황새치에 대한 보존조치 신설을 제안

〈FFA 남서 태평양 황새치 제안서 주요 내용〉

- (목표) 남서 태평양 황새치 자원량을 최근(2019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
- (적용 수역) 적도 이남 공해 및 EEZ
- (총허용어획량) 연간 7,558톤의 총 어획한도 설정
- (zone-based management) EEZ와 공해를 구분하여 국별 어획한도 설정 제안
- (부수어획 조치) 지난 3년간 황새치 부수어획량이 150톤 이상인 국가들은 세 가지 부수어획 저감조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행
 - (1) 어선 별 황새치 부수어획 한도 설정
 - (2) 어구 제한(라이트 스틱, 오징어 미끼 금지 등)
 - (3) 기타
- (옵서버 승선율) EEZ 승선율은 5%, 공해 승선율은 10%

- (논의 내용) 황새치 보존조치 범위를 현행 남위 20도 이남에서 적도 이남으로 확대 적용 제안에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합의가 이뤄졌으나,
 - 한국, EU, 대만 등 국가는 남방 황새치의 우수한 자원량과 WCPFC 수역 내 연승선 감소세 등을 고려하면 현행 조치의 어획/노력량 동결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 현행 조치가 SIDS의 개발 열망을 어떠한 형식으로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zone-based management 도입의 필요성을 반박하였으며,
 - 중국은 FFA가 제시한 7,558톤의 TAC가 과학위원회의 승인이 없다는 점과 황새치 부수어획 관리를 위해서는 남방 수역에서 목표조업이 이뤄지는 남방 날개다랑어에 대한 조치부터 개선해야 함을 주장
- (논의 결과) 황새치 제안서 미채택

2-20 제19차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연례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19차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연례회의
(회의명 영문) 19th Annual Commission Meeting
- 일시/장소 : 2022.11.28.~12.01(4일)/ 스바코프문트(나미비아)
- 의장 : Mr. Stefaan Depypere (EU)

2. 참석규모

- 참가국 : 한국, 일본, EU 등 회원국(7개국) 등 50여명 참석
- 우리나라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외 1명



II 회의결과

1. 2021년 국가별 이행 사항

- 202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협약 수역에서 어획 활동한 선박은 EU(스페인) 선박 1척뿐
 - 해당 선박이 유실 어구에 대한 보고 의무를 미이행하였음
 - 유실 어구에 대한 보고 의무를 명확하게 하도록 ‘감시·검색·준수·집행을 위한 SEAFO 시스템(SYSTEM)’ 개정을 이행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여 위원회에게 권고하였음

2. SEAFO SYSTEM 개정 검토

	수정 전	수정 후
8(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구의 주된 부분을 유실 또는 투기한 선박은 가능한 속히 해당 어구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구를 유실 또는 투기한 선박은 최소 24시간동안 해당 어구를 수색 또는 회수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8(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실된 어구를 회수할 수 없을 경우, 선박은 기국에 24시간 이내에 다음을 통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해당 선박명 및 무선호출부호 ii) 유실된 어구 종류 iii) 유실된 어구의 개수 iv) 어구가 유실된 시각 v) 어구가 유실된 위치, 및 vi) 유실된 어구를 회수하기 위해 선박이 경주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승 라인, 통발 어구의 10% 이상 또는 트롤의 어떠한 어구를 유실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선박은 기국에 24시간 이내에 다음을 통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해당 선박명 및 무선호출부호 ii) 유실된 어구 종류 iii) 유실된 어구의 개수 iv) 어구가 유실된 시각 v) 어구가 유실된 위치, 및 vi) 유실된 어구를 회수하기 위해 선박이 경주한 노력



3. 대면회의 주기에 대한 논의

- (논의 배경)
 - 2021년 제18차 연례회의에서 연례회의는 매년 개최하되 대면 회의는 격년으로 (biennial) 할 것에 대하여 합의하였음
 - 이에 대하여 과학위는 자원량 평가 및 TAC 설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연도에 대면회의가 이루어지길 권고하였음
- 당초 2023년에 과학위가 자원량 평가 및 TAC 설정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대면회의 주기에 따르면 과학위는 불가피하게 자원량 평가를 1년 연기시켜야함
 - 과학위는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년 더 연기해야하는 상황에 대하여 위험요소(risk)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음
 - 그러나 협약 수역 내 어획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원량에 미치는 위험요소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자원량 평가를 1년 연기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음
- (주요 의견)
 - (남아공) 작년 회의에 불참하였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없었으며 그러므로 위원회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
 - (일본, EU, 한국) 작년 총회에서 합의된 사안은 원칙이며 이를 번복할 수 없으며 시도도 없이 재검토하는 것은 시기상조임을 표명
 - (나미비아, 남아공) 개발도상 연안국들은 비대면 회의를 재개할 경우 기술적 한계 및 전기 부족으로 원활한 온라인 회의를 보장할 수 없음
 - (남아공) 연안국으로써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매년 대면 회의를 개최해야 함

○ (논의 결과)

- 2021년에 합의한 원칙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다수 회원국이 인정
- 개발도상국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원국의 경우 과학위, 재정위, 그리고 이행위 비대면회의를 사무국 회의실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결정
- 총회의 경우 사무국에서 회의실을 대여하여 회원국들이 비대면회의를 원활히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결정
- TAC는 1년 연장(rollover)되며 과학위는 내년 비대면회의를 통해 HCR 확인 후 자원량 상태가 심각한 상황일 경우 위원회에게 별도로 권고할 것



2022 | 국제수산협상
해외수산협력센터 | 연간 백서



2022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수산협상 연간 백서

발행처 해외수산협력센터
발행일 2022년 12월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53 에스빌딩 6층
전화 044-868-7363
인쇄·디자인 문원미디어 044-863-3993

2022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수산협상 연간 백서